

2024

아동수당 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보건복지부

아 동 권 리 헌 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 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④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⑦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⑧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⑨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016년 5월 2일

CONTENTS | 목차

2024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01

아동수당 개요

01

I. 아동수당 제도 개요	3
1. 목적	3
2. 지급 대상	3
3. 지급 금액 및 방식	6
4. 국가 등의 책무	6
II. 아동수당 업무 흐름도	7
III. 아동의 보호자	9
1. 개요	9
2. 보호자 요건	9
3. 보호자 판단 방법	10
4.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38

02

아동수당 신청

43

I. 신청권자	45
1. 아동의 보호자	45
2. 보호자의 대리인	45
II. 신청 방법 및 기간	47
1. 신청 방법	47
2. 신청 기간	49

CONTENTS | 목차

보건복지부

III. 구비 서류	51
1. 필수제출 서류	51
2. 추가제출 서류	52
IV.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작성	54
1. 신청 상담	54
2. 신청서 작성	55
3. 고지 사항	56
V. 현장 조사 (필요 시)	58
1. 현장조사 개요	58
2. 현장조사 주요내용	59
VI.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61
1. 정보제공 주체 및 대상	61
2. 정보제공 시기 및 방법 등	61
VII. 신청 등록 및 접수	63
1. 신청 등록	63
2. 접수 처리	63
VIII. 유형별 업무처리 방법	68
1.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68
2. 복수 국적자	70
3. 거주불명자	71

03

조사 및 보장 결정

73

I. 조사 개요	75
1. 일반 원칙	75
2. 조사의 종류	75
3. 자료 제출 요구	80

II. 가구 구성	81
1. 가구구성 원칙	81
2. 가구구성 절차	82
3. 가족관계등록정보 조회	84
4. 가구구성 사례	85
5. 시설입소 아동의 가구구성	87
6. 보장 가구주 및 관계 입력	87
7. 기타 사항	89
III. 수급자 결정 및 통지	92
1. 지급 결정	92
2. 결정 통지	92

04

아동수당 지급 95

I. 아동수당 지급 방식	97
1. 아동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97
2. 아동수당 지급 계좌	98
3. 아동수당 지급 절차	103
II. 미지급 아동수당	106
1. 개요	106
2. 청구권자	106
3. 청구 절차	107
4. 결정 통지 및 지급	107
III. 수급권 보호	108
1. 원칙	108
2.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108

CONTENTS | 목차

보건복지부

IV. 아동수당 지역상품권 지급	110
1. 개요	110
2. 상품권 지급 전 준비사항	111
3. 진행 절차 및 내용	111
4. 사후 관리	112

05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115

I.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17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117
2.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구분	117
II.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119
1. 아동수당 신청	119
2. 아동수당 지급	119
3. 아동수당 급여 관리	120
4.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121
III.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122
1. 아동수당 신청	122
2. 아동수당 지급	123
3.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123
IV.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124
1. 아동수당 신청	124
2. 아동수당 지급	126
3. 업무 처리방법	126

06**수급자 관리****131**

I. 수급아동 사후 관리	133
1. 사후관리 개요	133
2. 보호자의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	134
3.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135
II. 아동수당 급여액 환수	141
1. 개요	141
2.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142
3. 환수금 징수	144
4. 소멸 시효	145
5. 정리 보류	146
III. 부당 수급자 관리	148
1. 과태료 부과	148
2. 벌칙	151

07**이의신청 등****153**

I. 이의신청	155
1. 개요	155
2. 절차	156
3.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변경)의 효과	157
4.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157

CONTENTS | 목차

보건복지부

II. 이의신청위원회	158
1. 목적 및 기능	158
2. 설치	158
3. 구성	158
4. 운영	159
III.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60
1. 기능	160
2. 구성	161
3. 운영	162
4. 협조사항	163

08 아동수당 국가부담금의 관리 165

I.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167
1. 국가 부담 비율	167
2. 지방비 부담 비율	168
II. 부담금 집행 및 정산	169
1. 집행 범위	169
2. 주소지 변경 시, 아동수당 지급 지자체	169
3. 정산	169

09 서 식 171

부 록(아동수당법령)	213
-------------	-----

2024 아동수당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내용은 본문 확인 필요

목차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제1편 I. 아동수당 제도 개요 (3~4p)	(1) 연령요건 2023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참고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생월 \ 지급 시기</th> <th>'23.1.</th> <th>'23.2.</th> </tr> </thead> <tbody> <tr> <td>'15.1월생</td> <td>×</td> <td>×</td> </tr> <tr> <td>'15.2월생</td> <td>○</td> <td>×</td> </tr> </tbody> </table>	생월 \ 지급 시기	'23.1.	'23.2.	'15.1월생	×	×	'15.2월생	○	×	(1) 연령요건 2024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참고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생월 \ 지급 시기</th> <th>'24.1.</th> <th>'24.2.</th> </tr> </thead> <tbody> <tr> <td>'16.1월생</td> <td>×</td> <td>×</td> </tr> <tr> <td>'16.2월생</td> <td>○</td> <td>×</td> </tr> </tbody> </table>	생월 \ 지급 시기	'24.1.	'24.2.	'16.1월생	×	×	'16.2월생	○	×	아동수당 대상자 변경
생월 \ 지급 시기	'23.1.	'23.2.																			
'15.1월생	×	×																			
'15.2월생	○	×																			
생월 \ 지급 시기	'24.1.	'24.2.																			
'16.1월생	×	×																			
'16.2월생	○	×																			
VII. 신청등록 및 접수 (63p)	(1) 신청등록 * ① 아동수당만 신청할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② 기타복지사업과 함께 신청할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 신청등록 * 「 <u>사회보장급여 신청서</u> 」	필수서류 수정																		
제3편 I. 조사개요 (78p)	(신설)	(4) 확인조사 계획 ○ 조사 목적 - 아동수당 수급자의 해외체류 여부, 인적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반영하여 아동수당 수급권 및 인적 변동 여부 조사 -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아동수당 재정의 효율적 집행 및 안정적인 제도운영 도모 ○ 조사 근거 - 「아동수당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호 - 「아동수당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확인조사 계획 추가																		



목차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78~79p)		<p>○ 조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 수급권 및 인적 변동 확인조사 - 내용 : 수급권(수급권 상실, 지급 정지 등) 및 인적(보호자 변경)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아동수당 수급권 변동여부 확인 - 방법 : 공적자료를 활용한 조사 및 신고조사된 정보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조사 실시 <p>< 연간 확인 조사 항목 및 내용 ></p> <table border="1" data-bbox="780 788 1161 1490"> <thead> <tr> <th>조사대상</th> <th>조사 주기</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해외 장기 체류 아동</td> <td>연4회 (정기)</td> <td>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하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 및 지급 정지 결정</td> </tr> <tr> <td>사망아동</td> <td>연4회 (정기)</td> <td>사망 아동에 대하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 및 지급 정지 결정</td> </tr> <tr> <td>복수국적 아동</td> <td>연1회</td> <td>신청 당시 복수국적아동 중 국외여권 미등록 아동에게 국외여권 등록 고지 의무 안내 및 복수국적아동의 국외여권 등록</td> </tr> <tr> <td>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td> <td>연4회 (정기)</td> <td>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을 수급 받는 아동의 중복수급 여부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td> </tr> <tr> <td>해외입양 아동</td> <td>연2회 (정기)</td> <td>해외입양아동의 지급 정지 결정</td> </tr> </tbody> </table> <p>○ 조사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수급아동 및 그 보호자와 가구원의 인적사항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확인 조사 계획 수립 - 지자체 : 보건복지부 확인 조사 계획의 집행 및 지자체 자율조사*를 위한 시군구 	조사대상	조사 주기	주요내용	해외 장기 체류 아동	연4회 (정기)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하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 및 지급 정지 결정	사망아동	연4회 (정기)	사망 아동에 대하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 및 지급 정지 결정	복수국적 아동	연1회	신청 당시 복수국적아동 중 국외여권 미등록 아동에게 국외여권 등록 고지 의무 안내 및 복수국적아동의 국외여권 등록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연4회 (정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을 수급 받는 아동의 중복수급 여부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	해외입양 아동	연2회 (정기)	해외입양아동의 지급 정지 결정	
조사대상	조사 주기	주요내용																			
해외 장기 체류 아동	연4회 (정기)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하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 및 지급 정지 결정																			
사망아동	연4회 (정기)	사망 아동에 대하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 및 지급 정지 결정																			
복수국적 아동	연1회	신청 당시 복수국적아동 중 국외여권 미등록 아동에게 국외여권 등록 고지 의무 안내 및 복수국적아동의 국외여권 등록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연4회 (정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을 수급 받는 아동의 중복수급 여부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																			
해외입양 아동	연2회 (정기)	해외입양아동의 지급 정지 결정																			



목차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79p)		<p><u>확인 조사 계획 수립</u></p> <p>* ▲지역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적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일괄 조사가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복지 연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u>지자체 자율조사 필요</u></p> <p>-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공적자료 추출, 정비대상 자료 구축 등</p> <p>< 아동수당 확인 조사 업무 흐름도 ></p> <table border="1" data-bbox="778 786 1156 1502"> <thead> <tr> <th>단계</th> <th>수행기관</th> <th>업무처리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확인 의뢰</td> <td>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회보장 정보원</td> <td>○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상 명단 추출 요청 - (중점확인조사대상) 복지부에서 「아동수당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대상 명단 추출 요청 - (수시확인조사대상) 지자체에서 현장확인 등 확인조사가 필요한 대상 명단 추출 요청</td> </tr> <tr> <td>대상자 명부 전달</td> <td>사회보장 정보원 ↓ 보건복지부 지자체</td> <td>○ 지자체별 확인 대상자 명부 구축 - (중점확인조사대상) 분기 시작 월 또는 매월 초 - (수시확인조사대상) 요청일 다음날(D+1)</td> </tr> <tr> <td>확인 조사 실시</td> <td>지자체</td> <td>○ 확인조사 실시 및 결과 등록 - 우선 확인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복e음에 등록</td> </tr> </tbody> </table>	단계	수행기관	업무처리내용	확인 의뢰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회보장 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상 명단 추출 요청 - (중점확인조사대상) 복지부에서 「아동수당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대상 명단 추출 요청 - (수시확인조사대상) 지자체에서 현장확인 등 확인조사가 필요한 대상 명단 추출 요청	대상자 명부 전달	사회보장 정보원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지자체별 확인 대상자 명부 구축 - (중점확인조사대상) 분기 시작 월 또는 매월 초 - (수시확인조사대상) 요청일 다음날(D+1)	확인 조사 실시	지자체	○ 확인조사 실시 및 결과 등록 - 우선 확인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복e음에 등록	
단계	수행기관	업무처리내용													
확인 의뢰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회보장 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상 명단 추출 요청 - (중점확인조사대상) 복지부에서 「아동수당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대상 명단 추출 요청 - (수시확인조사대상) 지자체에서 현장확인 등 확인조사가 필요한 대상 명단 추출 요청													
대상자 명부 전달	사회보장 정보원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지자체별 확인 대상자 명부 구축 - (중점확인조사대상) 분기 시작 월 또는 매월 초 - (수시확인조사대상) 요청일 다음날(D+1)													
확인 조사 실시	지자체	○ 확인조사 실시 및 결과 등록 - 우선 확인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복e음에 등록													
<p>제4편 I. 아동수당 지급방식 (99p)</p>	<p>참고 디딤씨앗통장 개요(아동발달지원계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p>참고 디딤씨앗통장 개요(아동발달지원계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 	디딤씨앗 통장 개요 수정												



목차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 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 보호시설 등)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 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 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매칭·적립 : 디딤씨앗통장에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 보호시설 등)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 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 <u>까지 지원</u>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 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매칭·적립 : 디딤씨앗통장에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I. 아동수당 지급방식 (101p)	<p>다. 유의사항</p> <p>① 아동수당 신청과 동시에 디딤씨앗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되, 추후 디딤씨앗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p>	<p>다. 유의사항</p> <p>① 아동수당 신청과 동시에 디딤씨앗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u>사회보장급여 신청서</u>」를 접수하되, 추후 디딤씨앗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p>	접수서류 수정
(103p)	<p>(4) 압류방지 전용통장 입금</p> <p>※ 아동수당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우선 자격책정하고,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서식 21호)를 발급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p>	<p>(4) 압류방지 전용통장 입금</p> <p>※ 아동수당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u>사회보장급여 신청서</u>」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우선 자격책정하고,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서식 21호)를 발급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p>	제출서류 수정
III. 수급권 보호 (법 제 18조) (109p)	<p>(1) 발급 절차</p> <p>※ 아동수당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우선 자격책정하고,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p>	<p>(2) 발급 절차</p> <p>※ 아동수당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u>사회보장급여 신청서</u>」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우선 자격책정하고,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서식 21호)를 발급하여 압류</p>	제출서류 수정



목차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서식 21호)를 발급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	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																															
제6편 I. 수급아동 사후관리 (135~136p)	(2)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법 제 14조) 나. 지급 관련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기준 : A년 B월에는</th> <th>지급 : (A-8)년 (B+1)월 출생아까지</th> </tr> <tr> <td>2023년 01월분 아동수당은</td> <td>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td> </tr> <tr> <td>...</td> <td>...</td> </tr> </table>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8)년 (B+1)월 출생아까지	2023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1)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법 제 14조) 나. 지급 관련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기준 : A년 B월에는</th> <th>지급 : (A-8)년 (B+1)월 출생아까지</th> </tr> <tr> <td>2024년 01월분 아동수당은</td> <td>2016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td> </tr> <tr> <td>...</td> <td>...</td> </tr> </table>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8)년 (B+1)월 출생아까지	2024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아동수당 대상자 변경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8)년 (B+1)월 출생아까지																																
2023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	...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8)년 (B+1)월 출생아까지																																
2024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	...																																
II. 아동수당 급여액 환수 (143p)	○ 이자 가산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18</th> <th>'19</th> <th>'20</th> <th>'21</th> <th>'22</th> <th>'23</th> </tr> <tr> <td>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td> <td>1.6%</td> <td>1.8%</td> <td>1.2%</td> <td>0.8%</td> <td>1.3%</td> <td>3.5%</td> </tr> </table>	구분	'18	'19	'20	'21	'22	'23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6%	1.8%	1.2%	0.8%	1.3%	3.5%	○ 이자 가산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18</th> <th>'19</th> <th>'20</th> <th>'21</th> <th>'22</th> <th>'23</th> <th>'24</th> </tr> <tr> <td>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td> <td>1.6%</td> <td>1.8%</td> <td>1.2%</td> <td>0.8%</td> <td>1.3%</td> <td>3.5%</td> <td>3.1%</td> </tr> </table>	구분	'18	'19	'20	'21	'22	'23	'24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6%	1.8%	1.2%	0.8%	1.3%	3.5%	3.1%	이자율 반영
구분	'18	'19	'20	'21	'22	'23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6%	1.8%	1.2%	0.8%	1.3%	3.5%																											
구분	'18	'19	'20	'21	'22	'23	'24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6%	1.8%	1.2%	0.8%	1.3%	3.5%	3.1%																										
제8편 II. 부담금 집행 및 정산 (169p)	㉓ 정산 ○ 시군구청장은 아동수당 예산 집행 이후 국가부담금을 정산하여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다음해 1/4분기까지 반납	㉓ 정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아동수당 국가보조금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	보조금법 관련 내용 명시																														
제9편 서식 (173p)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된 서식 반영	고시 개정																														

2024 아동수당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ART. 01

아동수당 개요

- I. 아동수당 제도 개요
 - II. 아동수당 업무 흐름도
 - III. 아동의 보호자
-



I | 아동수당 제도 개요



1 목적 (법 제1조)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2 지급대상 (법 제4조)

(1)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8)년 (B+1)월 출생아
2024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4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4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4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



생월별 아동수당 지급 개요

지급 시기 생월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4.10.	'24.11.	'24.12.
'16.1월생	×	×	×	×	×	×	×	×	×	×	×	×
'16.2월생	○	×	×	×	×	×	×	×	×	×	×	×
'16.3월생	○	○	×	×	×	×	×	×	×	×	×	×
'16.4월생	○	○	○	×	×	×	×	×	×	×	×	×
'16.5월생	○	○	○	○	×	×	×	×	×	×	×	×
'16.6월생	○	○	○	○	○	×	×	×	×	×	×	×
'16.7월생	○	○	○	○	○	○	×	×	×	×	×	×
'16.8월생	○	○	○	○	○	○	○	×	×	×	×	×
'16.9월생	○	○	○	○	○	○	○	○	×	×	×	×
'16.10월생	○	○	○	○	○	○	○	○	○	×	×	×
'16.11월생	○	○	○	○	○	○	○	○	○	○	×	×
'16.12월생	○	○	○	○	○	○	○	○	○	○	○	×
'17년생	○	○	○	○	○	○	○	○	○	○	○	○
'18년생	○	○	○	○	○	○	○	○	○	○	○	○
'19년생	○	○	○	○	○	○	○	○	○	○	○	○
'20년생	○	○	○	○	○	○	○	○	○	○	○	○
'21년생	○	○	○	○	○	○	○	○	○	○	○	○
'22년생	○	○	○	○	○	○	○	○	○	○	○	○
'23년생	○	○	○	○	○	○	○	○	○	○	○	○
'24.1월	○	○	○	○	○	○	○	○	○	○	○	○
'24.2월	×	○	○	○	○	○	○	○	○	○	○	○
'24.3월	×	×	○	○	○	○	○	○	○	○	○	○
'24.4월	×	×	×	○	○	○	○	○	○	○	○	○
'24.5월	×	×	×	×	○	○	○	○	○	○	○	○
'24.6월	×	×	×	×	×	○	○	○	○	○	○	○
'24.7월	×	×	×	×	×	×	○	○	○	○	○	○
'24.8월	×	×	×	×	×	×	×	○	○	○	○	○
'24.9월	×	×	×	×	×	×	×	×	○	○	○	○
'24.10월	×	×	×	×	×	×	×	×	×	○	○	○
'24.11월	×	×	×	×	×	×	×	×	×	×	○	○
'24.12월	×	×	×	×	×	×	×	×	×	×	×	○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용어 정의 (법 제2조)

- 아동수당 수급권 :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
- 아동수당 수급권자 :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
- 수급아동 : 「아동수당법」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



3

지급 금액 및 방식 (법 제4조, 제10조)

- 지급 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 이하에서는 「아동수당법」 상 조사, 결정 등의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을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로 표기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4

국가 등의 책무 (법 제3조)

-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해야 함
-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해야 함



II | 아동수당 업무 흐름도



단 계	업 무 내 용
1. 신청·접수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상담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요건, 가구 구성, 보호자 등 확인 - 신청서 및 복수국적자 등 확인서류 제출 요청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등 비관할지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스캔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이관(원본서류는 3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에 이관) <p>※ 세부절차는 제2편 아동수당 신청-VII 신청등록 및 접수 부분 참고</p>
2. 가구구성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조회하여 가구범위 확정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관리 등
3. 사실관계 확인 (읍면동,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및 보호자 확정 후 접수 처리
4. 보장결정·지급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에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서식 2호)를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통지(서면원칙, 요청시 SMS, 전자우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액 및 보장기간 포함 * 필요한 경우 전화, 구두안내, SMS, 전자우편 통지를 병행할 수 있음. •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



단 계	업 무 내 용
5. 사후관리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수급자의 각종 변동사항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변동, 수급권 상실, 지급 정지, 지급계좌 변경 등 • 신고 기관 : 관할 읍면동 및 시군구 • 확인 방법 :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신고 시, 변동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 변경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서면원칙, 요청시 SMS, 전자우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경우 전화, 구두안내, SMS, 전자우편 통지를 병행할 수 있음. • 서류, 자료 제출 거부, 거짓 서류(자료)제출, 조사·질문 거부·방해, 기피, 거짓답변,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정지 사유 발생, 변경, 수급권상실, 주요 변경사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6. 급여액 환수 (시군구 사업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고발(부정수급 6개월 또는 60만원 이상) • 서면으로 통지하되, 필요한 경우 전화, 구두안내, SMS, 전자우편 통지를 병행할 수 있음. • 환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대상 확인 → 납부 고지 → 납부 독촉 → 압류(촉탁) → 공경매 처분 → 징수금액 처리 → 종결 •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 여부 확인 →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과태료 부과 통지 → 압류(촉탁) → 공경매 처분 → 징수금액 처리 → 종결
7. 이의신청처리 (시군구 사업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자격 인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기한 : 시군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 기관 : 관할 읍·면·동 및 시·군·구 •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



Ⅲ | 아동의 보호자



1 개요

-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법 제2조)
 -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양육 비용 부담, ▲일상적 보호·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함
-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대리 신청 (☞ “제 2편 - 1. 신청권자” 참고),
대리 수령 (☞ “제 4편 - 1. 아동수당 지급 방식” 참고)

2 보호자 요건 (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후견인 :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의 장 등)



- 그 밖의 사람 :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외)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미혼부 등)
 - ※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더라도, “그 밖의 사람”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

(2)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나,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까지 인정

3

보호자 판단 방법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경우

- ① 친권자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는 경우,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자가 됨
 - 부모와 아동의 동거 여부,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모 이혼 등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부모 각각에게 따로 있는 경우,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자(양육권자)를 보호자로 추정
 -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 다른 친권자·후견인이 없거나, ▲ 부모에게 양육권이 있거나, ▲ 해당 부모를 친권자로 선정·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
- ② 후견인의 경우 아동과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보호자로 추정
 - 후견인이 단순 재산 관리 등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자를 확인하여 보호자로 추정

**예시 1**

부모가 아동의 양육을 (외)조부모에게 맡기고, 아동의 주소지도 (외)조부모 쪽으로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 해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아동의 보호자로 추정

**예시 2**

부모가 이혼한 후 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부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 양육권을 갖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모를 아동의 보호자로 추정

**예시 3**

부모가 있는 아동이 A시가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후견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장이 아동의 보호자가 됨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 ① 친권자·후견인이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거나, 아동과 관계가 해체된 경우 등은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추정
 - 우선 공적자료(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등을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제 보호·양육자 판단 (필요 시, 친권자·후견인 등을 통한 확인 병행)
- ② 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자가 여러 명으로 보호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외)조부모 → 3촌 이내 친척 → 기타 동거인” 순서로 보호자 추정
 -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보호자에서 제외
- ③ 아동복지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 등은 시설장이나 위탁 부모가 보호자가 됨
- ④ 입양대상 아동을 입양기관에서 직접 보호하고 있는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되며,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가 보호자가 됨



예시 1 부모와 관계가 해체된 아동을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상담·현장 확인 결과 부모가 아동과 주거를 달리하면서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는 등 관계가 해체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외)조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예시 2 부모와 관계가 해체된 아동을 조모·고모·삼촌이 함께 양육하는 경우

⇒ 상담·현장 확인으로도 특정한 보호자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조모를 우선 보호자로 추정 (조모가 중대 질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예시 3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직접 보호하다 위탁모에게 보호 위탁하는 경우

⇒ 입양기관에서 인수한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이 보호자이며, 위탁모에게 보호 위탁되면 해당 위탁모를 보호자로 변경 조치

(3) 미혼부 자녀인 경우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미혼부는 생부의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생모와의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신청서(청구서), 법원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사본 또는 청구서 사본’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현장조사)을 거쳐 미혼부를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

* 필요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가능

- 추후 정기적으로 유전자검사결과 및 법원신청 결과를 확인(접수증명원상 사건번호, 당사자 등 이용 조회)하고 분기별 양육상황 점검
- 미혼부 보호자는 유전자검사결과, 법원 절차 완료, 타지역 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신고)해야 함
- 아동에게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완료 또는 타지역 전입·전출여부를 확인*하여, 기 부여된 전산관리번호 자격 상실처리 또는 전산관리번호 관리행정동 변경 조치(중복지급 방지)

* (예) ① 전입자의 경우 전출지(前 거주지역)에서 아동수당 수급했는지 확인하는 등 중복 수급여부 확인·조치
② 타지역 전출자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관련 자격상실 등 조치

** 전입·전출 지역 담당자간 유선 확인 등 필요



-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관계 부인시) ①친자관계 부인시에는 즉시 “지급을 유보”하되, 추후 아동의 거취나 보호자가 결정되면 미지급분까지 소급 지급
 - ※ (일시보호시설) 보호기간 3개월 미만 여부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미확정시 지급유보 중
- 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법 제16조제1항)하되, 사실상 보호자로서 아동을 양육한 경우에는 기 지급분은 미환수
 - * 실제 아동을 양육하지 않은 경우 등
- 다른 친권자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 후 지급

참고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지원**

- (지원내용) 출생신고 과정 지원, 친자검사비 지원(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확인 사항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시 관련 서류, 현장점검 등 확인 - 법원에 의한 출생신고 완료 등 상황 변경 확인·점검 - 아동양육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 (출생신고 완료 전까지) ●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담당자 확인 (서류, 현장점검) 후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 부여 및 지급 결정 - 아울러, 전입·전출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수급 여부 확인·조치 필요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입자의 경우 전출지(前 거주지역)에서 아동수당 수급했는지 확인하는 등 중복 수급여부 확인·조치 ② 타지역 전출자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관련 자격상실 등 조치 <p>※ 전입·전출 지역 담당자간 유선확인 등 필요</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시 처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아동수당 담당자에 의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 전산 관리번호 생성 후,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접수 진행 ※ 출생신고 완료, 타 지역 전출입 등 변동사항 발생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신고 완료 전까지 분기별 현장점검 - 출생신고 완료,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기존 통합조사표상 자격상실 처리 및 이후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통합 조사표 생성 - 타지역 전출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관련 자격상실 처리 또는 관리행정동 변경 등 조치

※ 기본적 사항은 '1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대상자' 내용 공통 적용



참고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1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출생연월일
주 소

사건본인의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 국적)

신청취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가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임을 확인한다.

라는 확인을 구함.

신청이유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원 귀중

첨부서류

1. 사건본인의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가 소재불명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 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추정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출생연월일
	주 소

신청취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한다. 라는 확인을 구함.

신청이유

년 월 일

신청인 : (인)

_____ 법원 귀중

첨부서류

1.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 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추정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 ○ 법 원
확 인 서

20 호기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출생연월일

성 별

주 소

사건본인의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 국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의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가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판사

인



[별지 제2-2호 서식]

○ ○ 법 원 확 인 서

20 호기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출생연월일

성 별

주 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의 모의 성명·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판사

㉠



인지의 허가청구

청 구 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 록 기준지:

사건본인:

생 년 월 일: 20 . . . 시 분생 남(여)자 (체중: kg)

출 생 장 소: 시 구 병원

주 소:

사건본인의 모: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 | |
|--|------|
| 1. 기본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의 모) | 각 1통 |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건본인의 모, 사건본인의 모의 전 남편) | 각 1통 |
| 3. 혼인관계증명서(사건본인의 모, 사건본인의 모의 전 남편) | 각 1통 |
| 4. 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의 모, 사건본인의 모의 전 남편) | 각 1통 |
| 5. 출생증명서(출생병원) | 1통 |
| 6. 후견등기사항증명서(사건본인의 모의 전 남편) | 1통 |
| 7. 기타 입증자료(유전자시험성적서 등) | 1통 |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청구권자는 사건본인의 생부입니다.
3.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각 인지액 5,000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송달료는 청구인 수×우편료× 6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 록 기 준 지:

피 고: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기 준 지: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3.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4.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5. 소장부분 1부
6. 기타 입증자료(유전자시험성적서 등) 1부

20 . . .
원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20 . . .
신청인 원고 (서명 또는 날인)

- ※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 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1. 소장에는 인지액 20,000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우편료 × 15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원 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 록 기 준 지:

피 고: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기 준 지: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3.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4.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5. 소장부분 1부
6. 기타 입증자료(유전자시험성적서 등) 1부

20 . . .
원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20 . . .
신청인 원고 (서명 또는 날인)

- ※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 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1. 소장에는 인지액 20,000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우편료 × 15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버지를 결정하는 소송 청구

원 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 사는 곳

등록기준지

피 고 1 (여기서는 전배우자로 상정)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 사는 곳

등록기준지

피 고 2 (여기서는 현배우자로 상정)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 사는 곳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민등록지

청 구 취 지

1. 피고 1, 피고 2 중에서 사건본인의 아버지를 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아동의 모, 전배우자, 현배우자, 아동이 각각 원고가 될 수 있음. 여기서는 모, 전 배우자, 현 배우자가 원고가 되는 사안만 정함. 모가 원고인 경우 전배우자, 현배우자가 각각 피고가 됨. 됨. 전 배우자가 원고가 될 경우 모, 및 현배우자가 피고가 됨. 현배우자가 원고가 될 경우 모 및 전배우자가 피고가 됨.



청 구 원 인

원고는 0000년 00월 00일 피고 1과 혼인하여 0000년 00월 00일 이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00일 이내인 0000년 00월 00일 사건본인 000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 000은 피고 2와 0000년 00월 00일 혼인한 후 200일 이후인 위 0000년 00월 00일에 출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법 제844조에 따라 피고 1 및 피고 2의 친생자로 동시에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고 중 누구의 친생자인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피고 1, 피고 2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2.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3. 원고, 피고 1, 피고 2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0 . . .
원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20 . . .
신청인 원고 (서명 또는 날인)

- ※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 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1. 소장에는 인지액 20,000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2.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우편료 × 15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의한 부(아버지)의 결정은 재혼한 모가 출생한 아동이 민법 제844조에 따라 전혼의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도 있고(이혼 후 300일 이내 자녀가 출생한 경우), 후혼의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후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아버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가 있다면 친자관계존재확인 또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친생자 추정이 중복된다는 사유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가 이혼 후 300일 이내 자녀를 출생한 경우
- 모가 재혼 후 200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경우



(4) 생모가 출산한 출생미신고 자녀

- * 아동이 미혼부와 실거주를 하여도 생모가 확인되고 함께 양육하는 경우 포함
- 생모가 출산한 출생미신고 자녀로서 법률상 배우자 자녀로 추정되는 사유 등으로 출생미신고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아동이 미혼부와 실 거주를 하여도 생모가 확인되고 함께 양육하는 경우 포함)
 - 생모는 해당 자녀에 대하여 출생증명서류(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출생사실 증명 서면**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한 출생확인신청서 사본***, 접수증명원), 친생자 확인을 위한 소송·청구 관련 서류(필요시) 등을 첨부하여 아동수당 신청
 - *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 ** 통일부 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 *** 추후 법원 출생확인서 등본 제출
 - 현장조사를 거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아동수당 보장결정, 이후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결과 확인, 분기별 양육상황 점검 등 실시
- 해당 가구 사례를 시군구별 출생 미신고자 전담지원 TF에 연계하고, 읍면동 종합상담창구에서 복지 및 비복지상담 진행, 필요시 공적급여 및 사례관리 등 연계
 - 필요시 아동보호팀으로 연계해 아동보호조치



참고 출생증명서류 및 출생신고 양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9. 27.>

출생증명서						
출생아의 부모	부	성명	연령	만 세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모	성명	연령	만 세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산모의 주소						
출생 장소	① 자가 ② 병원 ③ 의원 ④ 모자보건센터 ⑤ 조산원 ⑥ 기타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24시간제에 따름)		출생아	성별	남 · 여 · 불상	
임신기간	주			성명		
다태(多胎)	① 2태	다태아(多胎兒) 출산 중의 해당 출생아의 출산 순위	① 제1아 ② 제2아 ③ 제3아 ④ 제4아			
	② 3태 ③ 태		출생 명(남 명,여 명) 사산 태(남태, 여태, 불상)			
산모의 산아 수	명 중 생존자 명, 사망자 명, 사산자 태					
출생아의 신체 상황				몸무게	□.□□kg	
				신 장	□□.□□cm	
출생아의 건강 상황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명칭: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구청·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하며, 지연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서식]

출생사실 증명서면

장 귀하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출생자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	년 월 일	출생장소	
②출생자 (쌍태아 이상 인 경우에만 기재함)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순위	
	출생장소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순위	
	출생장소			
③부(父)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④모(母)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⑤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첨부서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사본 1부.

※ 주의사항: 허위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돕는 사람은 형법 제228조제1항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 작성방법

- ②란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 ①란에 이어서 출생한 순서대로 기재한다.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⑤란 중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한다.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 지〉

①출생자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	년 월 일	출생장소	
②출생자 (다태아인 경우에만 기재함)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순위	
	출생장소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순위	
	출생장소			
③모(母)	성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④기타				

※ 작성방법

- ②란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 ①란에 이어서 출생한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④란은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 대한 통지를 위한 작성란이며, ④란에는 부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③란을 작성한 경우에는 ④란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 ○ 법 원
확 인 서

20 호기 출생확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한다.

년 월 일

판사

㉠



〈별 지〉

출생자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	년 월 일	출생장소	
출생자 (다태아인 경우에만 기재함)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순위	
	출생장소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순위	
	출생장소			
모(母)	성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기타				



[양식 제1호]

출생 신고서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출생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①남 *①혼인중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②여 *②혼인외의 출생자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①자택 ②병원 ③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모	부 성명	(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③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 기타사항						
⑤ 신고인	*성명	①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①부 ②모 ③동거친족 ④기타(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조형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 졸업학교	부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모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인)	

작성방법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시는 24시간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아력(출생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 출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란: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의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③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④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모 사망, 행방불명 등)
 -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⑥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 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O)'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④ 고등학교에 '영표(O)'로 표시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
 -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중요

보호자 요건 확인방법

- ①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 ②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후견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면 보호자로 추정
 - ※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특정)로 조회 가능
- ③ 시설장, 위탁부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행복e음에서 시설 입소, 가정위탁 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호자 확인
- ④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를 확인 한 후에 신청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 i) 동일 주민세대인 경우, 신청인을 보호자로 추정
 - * 단,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함에도 삼촌, 이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질환·거동불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조부모를 보호자로 하도록 안내
 - ii) 주민세대가 다른 경우,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신청인의 아동보호 여부가 확인되면 보호자로 추정
 - ii-1) 신청인이 아동보호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자로 추정
 - * 필요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 ⑤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현장조사 확인을 거쳐 신청한 미혼부를 보호자로 추정
 - * 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신청서(청구서), 법원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사본 또는 청구서 사본'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필요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가능
- ⑥ 생모가 출산한 출생미신고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현장조사 확인을 거쳐 신청한 생모를 보호자로 추정
 - * 출생증명서류(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출생사실 증명 서면 등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한 출생확인신청서 사본, 접수증명원*), 친생자 확인을 위한 소송 관련 서류(필요시)
 - * 추후 법원 출생확인서 등본 제출
- ⑦ ①~⑥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자(기타 동거인 등)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자 여부 확인
 - * 필요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중요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에 대한 확인방법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 행복e음 상 부모 각각에 대해 사유 입력

사유	확인 방법
사망, 실종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자료 등 공적자료 확인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자료 등 공적자료 확인
가족관계 해체 (이혼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료로 해체가 입증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시설 입소, 후견인 지정, 친권 박탈·제한, 아동학대 등 공적 자료를 통해 사유 확인 입증할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아동과 부모의 동반 출입국 기록, 아동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ii) 현장조사 실시 및 「가족관계해체 사실 확인서」(서식 23호) 제출 요청
가출, 실종, 행방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서 가출신고 접수증, 실종 신고증, 가출인 수배부 등 제출 요청
군 입대, 교정시설 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료 확인
중증질환, 성년후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 질환, 의식 불명 등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병원 진단서, 전문의 소견서, 장기요양 인정서 등 제출 요청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장기 해외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출입국 자료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단기 출국,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에는 부모의 직접신청 유도 ii) 장기 출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의 위임장(서식 8호), 신청서(서식 1호)를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 대리신청 유도
시설아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시설 입소, 가정위탁 보호 등은 공적자료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입소, 가정위탁, 입양기관 내 보호 등의 경우에는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 확인 불필요 **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의 경우, 시군구 입양담당자 통해 확인 또는 「입양 대상 아동 위탁확인서」(입양기관 발급) 제출 요청
미혼부 ¹⁾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법원 등을 통해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추후 유전자검사결과, 법원신청결과 확인) * 실제 아동양육여부 확인(현장점검) 필요(미혼부 자녀에게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1)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부'로서 보호자가 되므로, 관련 내용 정비 필요
생모의 출생미신고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증명서류(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참여한 자,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출생증명 서면 등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한 출생확인신청서 사본, 접수 증명원), 친생자 확인을 위한 소송·청구 관련 서류(필요시) * 실제 아동양육여부 확인(현장점검) 필요(해당 자녀에게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참고

가구 유형별 보호자 우선 순위

가구 유형	보호자 우선 순위
① 부모 - 자녀 동거 가구 (한부모 가구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
② 부모가 아동과 함께 거주하지 않으나, 일정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③ 후견인이 지정된 아동 중 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④ 후견인이 지정된 아동 중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 (공적자료나 현장조사 등으로 행방불명·가출·가족관계 해체가 확인된 경우만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후견인이 보호자가 됨 • 후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가 보호자가 됨
⑤ 사망, 실종 신고,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후견인이 보호자가 됨 • 후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가 보호자가 됨
⑥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일시보호시설 제외)에 입소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⑦ 아동이 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에 입소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이 보호자로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되, 보호자가 확정(시설 전원, 가정 위탁 등)될 때까지 지급 보류 (보호자 확정 시 보류된 급여 함께 지급)
⑧ 가정위탁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부모
⑨ 입양대상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기관에서 보호 시 입양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됨 •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 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가 보호자가 됨



친생자 및 출생신고 관련 법령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 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가족관계등록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3. 16.〉

②**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

③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① 법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4조제4항제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2.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③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7조(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제8조(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4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법 제12조)

(1) 개요

- 시군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
 - 법령상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보호자 및 지급 계좌 변경 등 가능

(2) 보호자 변경 사유

-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제2조 제4호)를 범하여 임시조치(제19조), 보호처분(제36조), 피해아동보호명령(제47조) 등이 있는 경우
- ②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제2조 제1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제16조의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제2조)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
- ③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한 경우
 -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제2호)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제3호)



-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제4호)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제6호)
- ④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일시보호조치 (제15조제6항)를 한 경우
- ⑤ 수급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제34조)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모 동반시설의 경우,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 이외의 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 변경
- ⑥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제2조 제3호)를 범하여 임시조치(제29조), 보호처분 (제40조),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 등이 있는 경우
- ⑦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품·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 물질의 중독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⑧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망, 실종신고 등(사망 의심자, 가출, 실종, 행방불명 등 포함)*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 관리하는 보호자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다른 배우자 등이 거주지를 달리하여 아동수당 수급권자인 아동을 실제 양육, 보호하여 기존 보호자가 양육, 보호하지 않는 경우 포함



(3) 보호자 변경 절차

① 담당 공무원이 인지한 경우

- 공적자료 확인(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신고(아동위원, 이웃 주민 등), 사례관리 (맞춤형 사례관리팀, 드림스타트 등) 등을 통해 법령상 보호자 변경사유 발생을 아동수당 담당자(읍면동 및 시군구)가 인지한 경우 직접 보호자 변경 조치 가능
- 읍면동 담당자는 변경될 다른 보호자를 확인한 후, 해당 보호자에게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및 보호자 변경절차 진행
 - ※ 시군구(아동 업무 담당부서)에서 보호자 변경사유 발생을 확인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변경될 다른 보호자가 불분명하거나 구비서류 제출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우선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이후 보호자가 결정되거나 서류가 제출되면 그간 미지급된 수당까지 함께 지급 가능

② 다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 아동의 다른 보호자는 법령상 보호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읍면동에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 12호) 제출 가능
-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읍면동 담당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공적자료·구비서류 등 확인, 필요 시 현장조사 병행)한 후, 행복e음 상 보호자 및 지급계좌 변경 등 조치



참고

보호자 변경에 따른 가구원 구성 요령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입양기관 포함)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가구원에서 부모 등 기존 보호자는 삭제하고 시설장·위탁모 등 새로운 보호자를 등록
-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보호자 변경이 있는 경우(예 : 부 → 모 또는 모 → 부), 기존 가구원은 유지하고 보호자 및 급여지급계좌 변경·등록



(4) 구비 서류

-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서식 12호)
- 보호자 변경사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변경될 보호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담당자가 공적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요청
-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참고

보호자 변경사유 발생 확인 자료

-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의 경우 : 법원에서 발급한 결정서 사본
- 아동 단독시설 입소(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가정위탁·입양대상 아동 등 보호 형태가 변경된 경우 : 행복e음 변동 알림
- 부모 동반시설 입소(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의 경우 : 시설장 확인서
- 교정시설 입소 등의 경우 : 행복e음 변동 알림
 - 여성수용자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직접 양육이 가능하므로, 수시로 시설 내에서 실제 양육 중인지 여부를 확인
- 공적자료 또는 제출된 서류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
 - ※ 「아동수당법」 제7조에 따라 보호자 자격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조사·질문 가능



(5) 보호자 변경 시 급여지급

- 기준 시점
 - 담당 공무원이 인지한 경우 : 확인일
 - 다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 신청일
- 급여 지급 기준 (아동학대·가정폭력에 의한 보호자 변경은 별도 처리)
 - 해당 월 15일 이전 확인(또는 신청) : 변경된 보호자에게 급여 지급
 - 해당 월 16일 이후 확인(또는 신청) : 해당 월은 기존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 변경사유 발생 확인이나 서류 보완 등으로 보호자 변경이 지연되는 경우, 우선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이후 보호자가 결정되면 그간 미지급된 수당까지 함께 지급 가능



주의

아동학대·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자 변경 시 급여지급 기준

- 담당자가 인지하거나 다른 보호자의 신청이 확인되면, 조사 후 기존 보호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고 새로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
 - 새로운 보호자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등), 보호자가 확정될 때까지 급여지급 보류 가능
- 아동수당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월 급여는 기존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보호자에게 지급

PART. 02

아동수당 신청

- I. 신청권자
 - II. 신청 방법 및 기간
 - III. 구비 서류
 - IV.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V. 현장 조사 (필요 시)
 - VI.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 VII. 신청 등록 및 접수
 - VIII. 유형별 업무처리 방법
-



I | 신청권자(법 제6조)



1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 “제 1편 - III. 아동의 보호자” 참고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함

2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 부모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 ① 부모가 양육비 등을 보내는 경우 → 부모가 보호자, 조부모는 대리인
 - ②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가 확인된 경우 → 조부모가 보호자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 보호자의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필수서류 제출 필요)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 부모 동반시설의 경우,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가 보호자가 되고 시설장(또는 시설 종사자)은 대리인이 됨



참고

신청(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 아동이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
 - 사망, 실종 신고²⁾
 - 국적 상실³⁾
 -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 ※ 실종신고 취소, 국적 회복의 경우 수급권 회복 (단, 재신청 필요)
- 아동이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기산)
 - 행방불명자 : ▲ 실종신고 절차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이 경과한 자, ▲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
 - 거주불명 등록 (단,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 2) **실종 신고** : 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신고로써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신고 (「민법」 제27조)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28조) 살아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처리됨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
- 3) **국적 상실** : ▲ 외국 국적 취득, ▲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미포기, ▲ 국적 선택 불이행



II | 신청 방법 및 기간법 제조, 재이전



1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가급적 통지방범상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에 표기하도록 안내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회신
 - * 비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서류 접수하여 시스템 등록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이관(3일 이내 서류 이송)하여 처리(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므로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주의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 유형별 아동수당 방문신청 장소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되므로 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다담씨앗통장 개설 전이라도 우선 베이비박스 아동 등에 대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
-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 :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미혼부, 생모의 출생미신고 자녀 : 미혼부, 생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 방문신청시 지자체 읍면동 담당자는 부모교육(양육방법)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 등 홍보자료 배부



(2) 온라인 신청

- 복지포털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 온라인 신청시 부모교육 동영상 의무 시청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 ※ 계좌 유효성 확인 5회 실패 시에는 통장사본 첨부 등 가능
 - ※ (참고) 온라인 신청시 복수국적자임에도 복수국적자로 체크하지 않고 국외여권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점검 필요
 -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아동의 복수국적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법 제15조 및 제26조)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 (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발송
 -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보호자 변경 등을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



2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출생미신고 아동(미혼부 자녀, 생모가 출산한 자녀 등)의 경우 시군구별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TF”에 연계하고,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등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발급 전까지 사회복지전산 관리번호 부여(관련 서류 제출 필요), 종합상담창구에서 복지상담 및 필요시 공적급여, 사례관리 등 연계
 - 필요시 아동보호팀으로 연계해 아동보호조치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인지 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를 거친 경우
 -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포함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제12조)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예시 1 60일 기간산정 특례 사례

- '18.10.1일 출생, '18.10.10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19.1.10일 확정 판결, '19.1.15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19.2.20일 아동수당 신청한 경우
- ⇒ 소송절차가 진행된 '18.10.10~'19.1.10일을 제외하면 출생 후 50일 이내(9일('18.10.1~'18.10.9) + 41일('19.1.11~'19.2.20))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산정되므로, '18.10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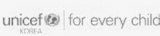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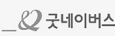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양육 129원칙

- 1 기본 전제** ·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 2 실천 원리** ·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 실천 방법

		
<p>자녀 알기</p> <p>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잘 살펴주세요.</p>	<p>나 돌아보기</p> <p>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아보세요.</p>	<p>관점 바꾸기</p> <p>내 자녀의 '문제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p>
		
<p>같이 성장하기</p> <p>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p>	<p>온전히 집중하기</p> <p>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주세요.</p>	<p>경청하고 공감하기</p> <p>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p>
		
<p>일관성 유지하기</p> <p>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주세요.</p>	<p>실수 인정하기</p> <p>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p>	<p>함께 키우기</p> <p>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p>





Ⅲ | 구비 서류



1

필수제출 서류

①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공통서식 1호)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서식 16호)

②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참고

여권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신분 확인방법

- '20.12.21일부터는 생년월일만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됨
 - * 여권 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를 제외하는 여권법 개정 및 시행
- 이에,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e하나로민원) 여권정보 조회를 통해 주민번호 확인
 - ②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토록하여 주민번호 및 여권발급정보 확인 가능
 - *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발급정보가 수록된 증명서
 - ** 여권정보증명서는 '20.12.21.일부터 지자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_온라인 정부24(영사민원24)를 통해 발급 가능

③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참고

대리신청 시 확인 사항

- ①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 입소 확인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 행복e음 등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요청
- ② 아동 및 보호자의 해외체류 여부 확인 (출입국 자료 등 확인)
- ③ 수급 계좌 명의자인 보호자에게 신청관련 위임 여부 등을 유선 연락 등으로 확인하여 상담내역 기록·관리

2

추가제출 서류

- ① 통장 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③ 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④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해외체류 여부, 국외 출생후 입국하여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참고

국외(해외)출생아 국내, 국외여권 등록

- ① 일부 국외출생 아동은 대부분 재외공관 등에서 출생신고 후 고유한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라도 친권자의 신청(동의)이 있으면 여권 발급
 - 해외출생자녀의 주민등록 신청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 입국 및 국내체류여부를 확인하여야 주민등록을 할 수 있음에 유의(주민등록사무편람)
- ② 국내여권 및 국외여권 사본을 징구하고 아동수당 신청등록 시스템상 구비서류를 등록하고, 복수국적자정보 등록, 해외출생자정보등록에 여권정보 반드시 등록·관리



⑤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 필요



참고

특별기여자 자격관리

○ 특별기여자 자격책정(3가지 모두 충족 필요)

- ① 대상 아동의 외국인등록증상 번호가 F-2비자로 확인된 자
- ② 법무부에서 해당 지자체(외국인업무 담당자)에 제공하는 특별기여자 명단(공문)과 대조하여 특별기여자 인지 최종 확인
- ③ 외국인등록증 및 해당 공문 등 구비서류(행복e음 시스템 구비서류 등록시 반드시 서류명 난민증명서 카테고리에 등록) 첨부

⑥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신청서(청구서), 법원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사본 또는 청구서 사본’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전자검사결과, 법원신청결과 서류 추후 제출요구 및 수시 확인

⑦ 생모가 출산한 출생미신고 자녀

- 출생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참여한 자*,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출생사실 증명서면 등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한 출생확인신청서 사본, 접수증명원***), 필요시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 소장(청구서) 사본, 접수증명원 등 서류

*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 통일부 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 추후 법원 출생확인서 등본 제출 및 출생신고 여부 지속적 확인



IV |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작성



1 신청 상담

(1) 신청자격 등 확인

- 지급요건 안내 및 신청인 인적사항 등 확인

☞ “제 1편 - Ⅰ. 아동수당 제도 개요” 및 “제 2편 - Ⅰ. 신청권자” 참고



참고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처리 절차

- ① 아동의 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전산 상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② 시설에 입소했거나 (외)조부모·위탁가정 보호 여부 등을 전산 상 확인
- ③ 행방불명·가출 등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서에 행방불명·가출 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안내 (신고 30일 후 효력 인정)
- ④ 신청인이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 등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 등을 거쳐 보호자 확인
 - i) 공적자료를 통해 후견인 지정, 친권 박탈·제한 등 확인
 - ii) 아동과 부모의 동반 출입국 기록, 아동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 확인
 - iii) 필요 시, 부모 또는 관계인에게 유선 연락하거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 (이혼,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연락이 부적절한 경우 제외)
 - iv) 상담, 현장조사 내용을 행복e음에 기록하고, 부모 각각에 대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사유를 분류하여 입력

(2) 가구구성 안내 (☞ “제 3편 - Ⅱ. 가구 구성” 참고)

- 아동을 중심으로 가구를 구성하되,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가구원 구성



(3) 아동수당 지급계좌 안내 (☞ “제 4편 - I. 아동수당 지급 방식” 참고)

- ①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현장 수령·우편 발송 등 방식으로 지급 가능
- ②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등) 보호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만 지급 (다른 계좌는 불가)
 - * 단, 1~3개월 내의 단기보호 대상 아동은 제외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
- ③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도 지급 가능
 - ※ 아동수당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우선 자격책정하고,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서식 21호)를 발급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
- ④ 보호자가 성년후견개시 등으로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등의 상황이면, 대리 수령(제3자 명의 계좌 입금) 가능

2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관계정보, 주민정보 등을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가구 구성에 반영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시 신청인에게 관련서류 직접 제출 요청
 -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서 관련서류 발급 권한이 있는 담당자는 아동수당 상담·신청을 위해 행정내부 발급 등 적극 협조
- 상담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출력·제공하고, 신청인이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제출



3

고지 사항

(1) 처리기한 및 통지방법 (법 제9조)

-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 통지 방법 : 서면 통지원칙이나 신청시 SMS,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가능
 - * 필요한 경우 전화, 구두안내, SMS, 전자우편 통지를 병행할 수 있음.

(2) 신고 의무 (법 제15조)

-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보호자 변경 사유 발생, ▲지급계좌 변경, ▲외국 국적 취득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때, ▲보호자의 이혼 등 가구원 구성 변동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신고
 - 미신고 시,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는 환수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다음의 경우, 보호자의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
 - 아동 사망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를 한 경우
 - 국적 상실 : 「국적법」 제16조에 의한 국적 상실자의 처리
 - 90일 이상 국외체류 : 출입국 시 국내 여권을 사용한 경우
 - ※ 복수 국적자는 외국여권사본을 제출해야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여권 제출하기 전까지 지급 정지, 추후 여권 발급 시에도 반드시 외국여권사본을 제출해야함을 안내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부적정 지급된 급여는 환수 및 과태료 부과)

(3) 환수 및 처벌 규정

☞ “제 6편 - II. 아동수당 급여액 환수, III. 부당수급자 관리” 참고



- 지급된 아동수당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법 제1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이자를 붙여 환수
 - 수급권이 상실된 이후 또는 지급 정지 기간에 지급된 아동수당 급여액 전부
 -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 「국세징수법」제3장 강제징수(제24조~제106조) 참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24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또는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법 제7조)되거나, 결정이 취소(법 제9조)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26조)

(4)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 인적 사항 및 가족 관계 확인, 사회보장급여 수혜 이력,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해외출입국 기록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법 제7조)
 - *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도 확인 가능
- 수집된 정보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 * 지급결정 후 중지 뿐 아니라, 지급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정보 보유
 - ** 지원 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V | 현장 조사 (필요 시)



1 현장조사 개요

① 현장조사 대상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세대를 달리하는 아동수당 신청인이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

-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보호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반드시 현장조사 실시 (실제 자녀 양육여부 확인)

② 현장조사 수행자

- 읍·면·동 아동수당 담당자가 현장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 내부 협의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담당자 및 시군구 드림스타트 담당자에 의뢰하여 현장 조사 가능

③ 현장조사 절차

- 아동수당 신청 → 현장조사 실시·확인 → 아동수당 접수* → 필요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아동의 수급권 보호 및 60일 처리기한 준수 위해 선 접수처리, 후 현장조사 가능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관련 현장조사 기록지», 「가족관계해체 사실 확인서」 등을 심의할 수 있음 (선 보장, 후 심의 가능)



2

현장조사 주요내용

① 아동의 상태

- 대상아동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및 필수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을 파악
 - * 아동의 건강상태가 열악하거나 적절한 의료지원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사업 등 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안내
- 아동과 대화가 가능한 경우, 주 생활장소나 양육자 등을 확인

② 양육 환경

- 조사자가 주거환경,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을 보호자에게서 확인

③ 가족관계 해체 여부

- 부모와 아동이 같은 날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지, 아동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 확인
 -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 가능
- 가족관계가 해체된 사유 등을 파악하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가족관계해체 사실 확인서」(서식 23호)를 제출 요청

④ 타 복지제도 연계 필요성

-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연계할 수 있는 공공·민간 복지사업 안내



참 고

아동수당 관련 현장조사 기록지							
아동의 상태	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상태	<input type="checkbox"/> 매우양호,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불량, <input type="checkbox"/> 매우불량					
		키	cm	몸무게	kg	질환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일		검진결과			
	예방접종	실시일		접종명			
양육환경	주거환경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다세대,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구분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상태	※ 면적, 위생환경 등 기재				
	주양육자 (보호자)		아동과의 관계				
	양육태도	<input type="checkbox"/> 엄격,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허용, <input type="checkbox"/> 방임					
	기관보육 현황	이용시설		이용시간			
타 제도 연계 희망	<input type="checkbox"/> 가정위탁, <input type="checkbox"/> 아동급식, <input type="checkbox"/> 디딤씨앗통장, <input type="checkbox"/> 한부모지원, <input type="checkbox"/> 기저귀·조제분유,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통합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보육료·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드림스타트 <input type="checkbox"/> 기타 ()						
<담당자 종합의견> <div style="text-align: right;"> 조사 담당자 소속 : 직급 : 이름 : </div>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 아동과 부모의 동반 출입국 기록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아동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VI |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법 제5조)



1 정보제공 주체 및 대상

- 정보 제공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
- 정보 제공 대상 : 아동수당 대상 아동의 보호자 (아동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2 정보제공 시기 및 방법 등

- 출생 아동의 보호자 :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1회 이상(아동수당을 이미 신청한 경우 제외 가능,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안내)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이 경우 그 다음 날까지)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함을 반드시 안내
- 아동수당 미수급 아동의 보호자 : 매년 1월 말까지 최소 연 1회 이상 안내
- 아동 주소지 관할 지자체(읍면동)에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면(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공
 - 단,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정보 내용 : 아동수당 신청 방법·절차, 구비 서류, 지급 대상·금액·지급시기·방법 등

**< 아동수당 신청 안내 > - 예시문**

◆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귀하의 자녀는 2024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여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아동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 (지급일·금액)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 입금
 - ※ 시군구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소급지급)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이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 ※ 부모가 사망·관계단절·양육포기 등의 사유로 아동을 실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의 경우 추가 서류 별도 문의
- (제출 서류) 안내문에 동봉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복지포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정부24(www.gov.kr)로 온라인(모바일앱) 신청
 -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부모의 공인인증서 필요
 - ※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관련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 전화번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VII | 신청 등록 및 접수



1 신청 등록

- 가구 구성 등 신청 내용의 적정성 및 서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 등록, 이때 신청일은 필수 서류가 제출된 날로 입력
 -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필수 서류*를 행복e음에 등록(스캔 등)하면서 신청일 입력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가구원 구성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신청 등록 처리
 -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처리
 - ※ 거주지 등 비관할지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스캔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이관(원본서류는 3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에 이관)

2 접수 처리

- 신청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 처리
 - ※ 급여 신청일이 급여 기준일임
- 행복e음에 접수 처리 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 ※ 비관할지 읍면동에서 신청 정보(서류)를 이관받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참고

아동수당 신청접수 전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항목	조치사항
보호자 확인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모두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유 파악 및 입력 • 신청인(보호자)이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가 지침에 따라 확인되었는지 점검
가구 구성	• 부모가 가구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 부모가 사망, 이혼으로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관계 해체라도 부모는 항상 가구구성에 포함
	• 부모와 (외)조부모가 모두 가구 구성에 포함된 경우	• 부모가 사망, 이혼으로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관계 해체라도 (외)조부모는 가구구성에서 제외
	• 친인척, 동거인 등이 가구 구성에 포함된 경우	•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등 친인척, 동거인은 가구 구성에서 제외
	• 주민세대에 없는 아동의 형제 자매가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	• 부모의 가족관계등록 자료 조회(발급)하여 아동의 형제 자매 여부를 확인
아동 과의 관계	• 통합가구주가 아동인 경우	• 아동 단독가구가 아닌 경우 통합가구주는 기존 통합조사표의 가구주로 하거나 주민세대정보의 가구주로 구성할 것을 권장
	• 보장가구주가 아동이 아닌 경우	• 아동수당 보장가구의 가구주는 수급아동이고 보장가구원별 가구주와의 관계는 아동과의 관계를 입력



전국단위 신청

1. 목적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지자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2. 주소지 관할·비관할 시·군·구의 역할

가. 주소지 비관할 시·군·구의 역할

- 안내 및 상담
 - 안내 가능한 사업내용 및 수급자 선정 관련 일반적인 상담 진행
- 신청
 - 민원인의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 전부를 스캔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서류의 이송
 - 신청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은 급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 전부를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 서류의 보완

-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요구 가능
- 신청인의 주소지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관 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에서도 이를 제출받아 시스템에 스캔 등록 가능

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역할

○ 접수

- 신청지원기관 또는 타 주소지에서 신청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접수처리
- 관할 주소지 보장기관은 이송받은 문서(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급여신청의 접수 및 보완 여부 결정

○ 접수처리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흠결이 없을 시 접수 처리하며 이때 접수일자(민원처리 산정의 기준일)이 됨
 - ※ 급여지급기준일은 신청일이 되므로 혼선되지 않도록 유의

○ 서류보완

- 주소지 보장기관의 확인 결과 신청서류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완이 안 될 경우는 반려 처리
- 서류의 보완 요청 시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주소지 지자체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비관할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가능함을 안내
 - * 신청인은 온라인 복지포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보완 요청받은 내용을 확인 후 구비서류 제출 가능

○ 보장결정

-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자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사업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통지
 - * 통지의 방법, 통지기일, 통지의 내용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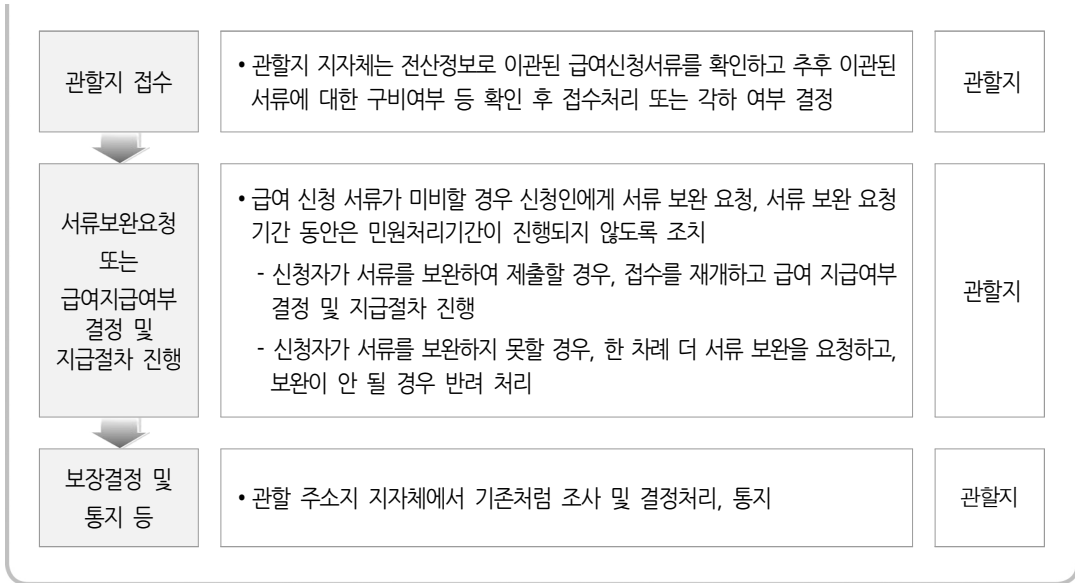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④ 생략

3. 전국단위 신청 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주 체
비관할지 방문	• 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하여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민원인
↓		
급여신청서 작성	• 신청인은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서를 작성	민원인
↓		
급여 신청서 제출 및 비관할지 수령	• 신청인은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한 주민센터에 제출 • 비관할지 주민센터는 급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령	민원인 비관할지
↓		
급여 신청 서류 시스템 등록	• 비관할지 주민센터는 민원인의 신청서를 시스템에 등록 • 비관할지 주민센터는 급여신청 관련서류를 스캔하여 시스템 등록	비관할지
↓		
문서이관	• 비관할지 주민센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급여신청서류 이관(3일 이내)	비관할지
↓		





VIII | 유형별 업무처리 방법



1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 개요 :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의 제한된 자격 관리에 따른 아동수당 이종 지급 등 방지 필요
 - * 전산 관리번호는 출생년도만 관리하므로 자격 유지·상실의 기준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조사 방안 : 기존 대상자(주민등록 미부여자) 중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 확인 → 급여 중지 및 신규 생성
 - 읍면동 담당자 :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 부여 수급자에 대한 행복e음 통합 조사표 입력 및 관리 철저
 - 시군구 담당자 : 연간 확인 조사 시,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 대상자 일괄 자격 정비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지급)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양육여부, 보호자 여부 등 확인(현장조사서(서식7호) 기록)
 - ※ 아동의 수급권 보호 및 60일 처리기한 준수 위해 선 접수처리, 후 현장조사 가능
 - 의료급여 사업의 '무호적자(자료구분(4))' 기준에 맞추어 전산관리번호 부여 후 지급
 - * 필요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가능
- 사후관리
 - 출생신고 완료 전까지 분기별로 아동 양육관련 등 점검 (아동 양육여부, 법원 확인 절차 등 진행상황 확인 등 현장점검)
 - * 유전자검사결과, 법원확인 절차 완료, 타지역 전출입 등 변동사항 발생시 보호자가 관련 사실을 아동거주지(보호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
 - 중복지급 방지 등 자격 관리를 위해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완료 또는 타지역 전출 시, 기 부여 전산관리번호 자격상실 후 신규 발급 또는 관리행정동 변경 필요



<의료급여(무호적자(자료구분(4)) 기준)>

구 분	전산관리번호 구성	적용대상자
[자료구분(4)]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아닌 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①-②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③ : 자료구분(4) ④-⑥ : 보장기관기호 (해당 시·군·구 행정동 부호 앞 3자리) ⑦ : 성별(남: 1, 3 /여: 2, 4)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 (남: 1, 여: 2) 2000년대 출생(남: 3, 여: 4) ⑧-⑨ : 관리번호 부여년도 (2000년 00, 2007년 07) ⑩-⑬ : 일련번호 <예시> '07.1.15일 대전동구(3640000) 100번째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 (1957.5.30.일생 남자) ⇒ 574364-1070100	○ 사회취약계층 특별 보호자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자 - 입양대상 아동 - 무호적자 - 북한이탈주민 - 기타

확인 사항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확인지(베이비박스 관할 지자체 등) 문의를 통한 전산 관리번호 부여 및 아동수당 중복 수급 여부 확인 -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 명단 작성 및 읍면동 시달 • 읍면동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 유선 또는 현장 확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아동수당 담당자에 의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의 경우 이중수혜 유무 확인 - 통합 상담 내역에 전산 관리번호 관련 상담 내역 기록 - 전산 관리번호 생성 후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접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퇴소 또는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 의무 안내 •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퇴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기존 통합 조사표상 자격 상실 처리 및 이후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통합 조사표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비밀 유지 필요 시, 전산 관리번호 유지 가능



2

복수 국적자

- 개요 : 국외여권을 통한 출입국기록 확인이 어려운 복수 국적자의 경우,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에도 계속 수급이 가능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별도 관리 필요
 - * 국외 여권으로 출입국 시, 출입국 사무소에서 확인 불가
- 조사 방안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출입국 기록 등 자격 정비(단, 수급아동이 국외 여권으로 출입국 시 신고 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을 사전 안내 및 필요시 서약서 작성 관리)

확인 사항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 복수국적자 유무 체크 확인 •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 변동알림 시 자격 적정성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 국적자에 대하여 국외 여권 사본을 징구 (국외여권으로 출입국 시 신고 의무 발생 등 안내) • 확인 결과, 미신고 상태로 국외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 상 보장 정보에서 보장별 서비스 상태를 급여 정지로 변경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환수규정에 의해 환수처리 및 부당수급에 의한 과태료 부과

- 복수국적 아동은 국외여권 사본을, 해외출생 아동은 입국증빙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급여정지 처리 (추후 제출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가 아님이 확인되면 정지되었던 급여 소급지급)

* 복수국적, 해외출생의 경우 출입국 파악이 어려운 점 등 감안하여 관련서류 제출 필요



3

거주불명자

- 개요 : 거주불명자의 경우 주민등록재발급, 인감증명 발급 등은 제한되나,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서비스는 지급 가능
- 조사 방안 : ① 거주불명자가 실제 거주지로 신고한 주소지 또는 자주 머무르는 장소 (찜질방, 공원 등) 현장 방문 또는 유선 확인
 ② 거주불명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 및 주변인들에게 평상 시 거주 여부 등 확인
 ③ 확인 결과 신고 사실과 다른 경우 급여 정지 처리

확인 사항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불명자 대상자 명부 관리 및 읍면동에 통지 • 읍면동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된 거주지 현장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불명자의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친인척 등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하여 관리 (상담내역 기재 등) - 매월 급여 지급을 위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 불가 시, 급여 미지급 뒀을 강조 • 확인 결과, 신고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 상 보장 정보에서 보장별 서비스 상태를 급여 정지로 변경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정지 후 실제 거주지가 재확인된 경우에는, 확인한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2024 아동수당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ART. 03

조사 및 보장 결정

- I. 조사 개요
 - II. 가구구성
 - III. 수급자 결정 및 통지
-



I | 조사 개요



1 일반 원칙

- ① 아동수당법 개정(2019.1.15 공포)에 따라 소득·재산조사 폐지
 - 금융재산 등 조회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징구 불필요
- ② 아동의 보호자,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 등에 대한 조사는 유지
 - 가구구성 방법,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는 사유 입력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해야 함에 유의
 -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 아동의 보호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타 복지 급여·서비스 연계

2 조사의 종류

(1) 신청 조사 (시행령 제6조)

- 조사 목적 : 아동수당 신청에 따른 보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조사 대상 : 아동 및 그 보호자와 가구원 (아동의 부모, 형제자매 등)
- 조사 내용 : 아동의 수급자격, 아동 가구의 인적사항
- 조사 시기 : 아동수당 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 조사 방법 : 행복e음을 통한 자료 확인 및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 결과 처리 : 수급 자격 여부 및 급여액 등을 결정하여 급여 신청자와 대상자에게 통지



주의

보호자 확인을 위한 조사

-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고, 그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 확인이 중요
- 「아동수당법」 제7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보호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의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질문 할 수 있음
- 읍면동 담당자는 아동수당 신청 시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고, 공적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자를 확정, 가구 구성 시 보호자를 입력하여야 함
(☞ “제 1편 - Ⅲ. 아동의 보호자” 참고)
- 단, 보호자 불분명 등을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거부 등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 아동수당 신청에 따른 조사절차 〉

단 계	업무 내용	처리 부서
상담·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및 가구 구성, 신고 사항 확인 - 신청서 등 구비 서류 확인, 보호자 및 가구 구성 확정 - 90일 이상 해외체류,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확인 * 필요시 보호자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 실시 ○ 행복e음 신청 및 접수 처리 	읍면동 담당
↓		
보장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 인적정보 조회 (출입국 등) 및 확인 ○ 보호자가 친인척 등인 경우, 현장조사 결과 확인 ○ 보장결정 처리 	시군구 사업 담당

(2) 확인 조사

- 조사 목적 :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하여 수급권 유지 여부 등을 확인
- 조사 내용 : 아동의 수급자격 및 아동 가구의 인적사항 조사
- 조사의 구분



- 정기 조사
 -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인적정보 일괄 갱신
- 수시 조사
 -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입수되는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인적사항 등의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실시
- 변동 신고에 의한 조사
 - 수급아동의 보호자 등이 인적 사항, 보호자 변동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아동수당 확인 조사의 범위 〉

구 분		조사 내용	세부 내용
인적사항 변동	인적 변동	보호자·가구원 변동, 수급권 상실, 지급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재혼·이혼, 부모 등의 출산, 가구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조치 등 • 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해외 장기체류 등
	관리 행정동	주소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입
급여 관리	급여 지급	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 변경

(3) 조사 결과 처리

- 수급자격 유지 또는 중지, 급여액 변경, 보호자 변경 등 조치 및 통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까지 포함하여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4) 확인 조사 계획

○ 조사 목적

- 아동수당 수급자의 해외체류 여부, 인적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반영하여 아동수당 수급권 및 인적 변동 여부 조사
-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아동수당 재정의 효율적 집행 및 안정적인 제도운영 도모

○ 조사 근거

- 「아동수당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 「아동수당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조사 방법

- 항목 : 수급권 및 인적 변동 확인조사
- 내용 : 수급권(수급권 상실, 지급 정지 등) 및 인적(보호자 변경)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아동수당 수급권 변동여부 확인
- 방법 : 공적자료를 활용한 조사 및 신고·조사된 정보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조사 실시

〈 연간 확인 조사 항목 및 내용 〉

조사대상	조사주기	주요내용
해외 장기체류 아동	연4회 (정기)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하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 및 지급 정지 결정
사망아동	연4회 (정기)	사망 아동에 대하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 및 지급 정지 결정
복수국적아동	연1회	신청 당시 복수국적아동 중 국외여권 미등록 아동에게 국외여권 등록 고지 의무 안내 및 복수국적아동의 국외여권 등록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연4회 (정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을 수급 받는 아동의 중복수급 여부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
해외입양아동	연2회 (정기)	해외입양아동의 지급 정지 결정



○ 조사 체계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수급아동 및 그 보호자와 가구원의 인적사항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확인 조사 계획 수립

- 지자체 : 보건복지부 확인 조사 계획의 집행 및 지자체 자율조사*를 위한 시군구 확인 조사 계획 수립

* ▲ 지역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적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일괄 조사가 어려운 경우, ▲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복지 연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자체 자율조사 필요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공적자료 추출, 정비대상 자료 구축 등

〈 아동수당 확인 조사 업무 흐름도 〉

단계	수행기관	업무처리내용
확인요청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상 명단 추출 요청 - (중점확인조사대상) 복지부에서 「아동수당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대상 명단 추출 요청 - (수시확인조사대상) 지자체에서 현장확인 등 확인조사가 필요한 대상 명단 추출 요청
대상자 명부 전달	사회보장정보원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지자체별 확인 대상자 명부 구축 - (중점확인조사대상) 분기 시작 월 또는 매월 초 - (수시확인조사대상) 요청일 다음날(D+1)
확인조사 실시	지자체	○ 확인조사 실시 및 결과 등록 - 유선 확인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복e음에 등록

참고

부서 간 역할 분담

- 시군구 사업팀 : 조사범위 할당 등 확인 조사 계획의 수립, 조사 결과 취합·정리
- 읍면동 : 보호자에 의한 아동의 실제 보호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 실시



3

자료 제출 요구 (법 제7조)

- 신청인이 행복e음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및 추가 자료 제출 등은 신청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방문 요청 최소화
 - ※ 아동수당 지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행복e음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참고

자료제출 요구 관련 참고사항

- 조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 필요시, 국민 불편 및 시군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필요
 - * 제출 안내, 제출서류 접수·스캔하여 시스템 반영 등 협조
- 서류 제출 시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서류제출 안내 및 활성화 필요
 - * 아동수당 서류제출 공용 이메일 계정 운영 등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아동수당 급여 지급의 결정을 취소·정지·변경 가능 (법 제7조 제6항, 제9조 제3항)

〈필요시,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서류	목적
보호자 확인	실종 등의 신고 접수서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입증할 필요 ※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 확인서, 재소 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는 제출 제외
복수국적자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필요
국외출생아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 시 여행증명서 등	해외에서 출생하였으나 입국하여 장기 해외 체류상태가 아님을 소명



II | 가구 구성



1 가구구성 원칙

- ①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아동과 부모 및 아동의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포함
 - * 19세 이상 형제자매도 가구구성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이혼가정인 경우,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부모와 형제자매 제외
 - 재혼가정인 경우,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의 배우자 및 그 자녀 포함
 - * 이 경우, 부모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각각 아동의 “부모”, “형제자매”로 간주
 -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 부모·형제자매 등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구 구성
- ②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아동의 (외)조부모를 부모 대신 가구구성에 포함
 - * 부모가 모두 사망, 실종선고, 이혼으로 가구 분리된 경우로 한정됨
 - 부모가 가출·실종, 연락두절, 교정시설 입소 등인 경우에도 부모를 가구구성에 포함하고 (외)조부모는 제외
 - 친인척은 가구구성에 포함하지 않음
 - * 아동을 실제 보호하는 (외)조부모, 친인척은 보호자로 입력하여 관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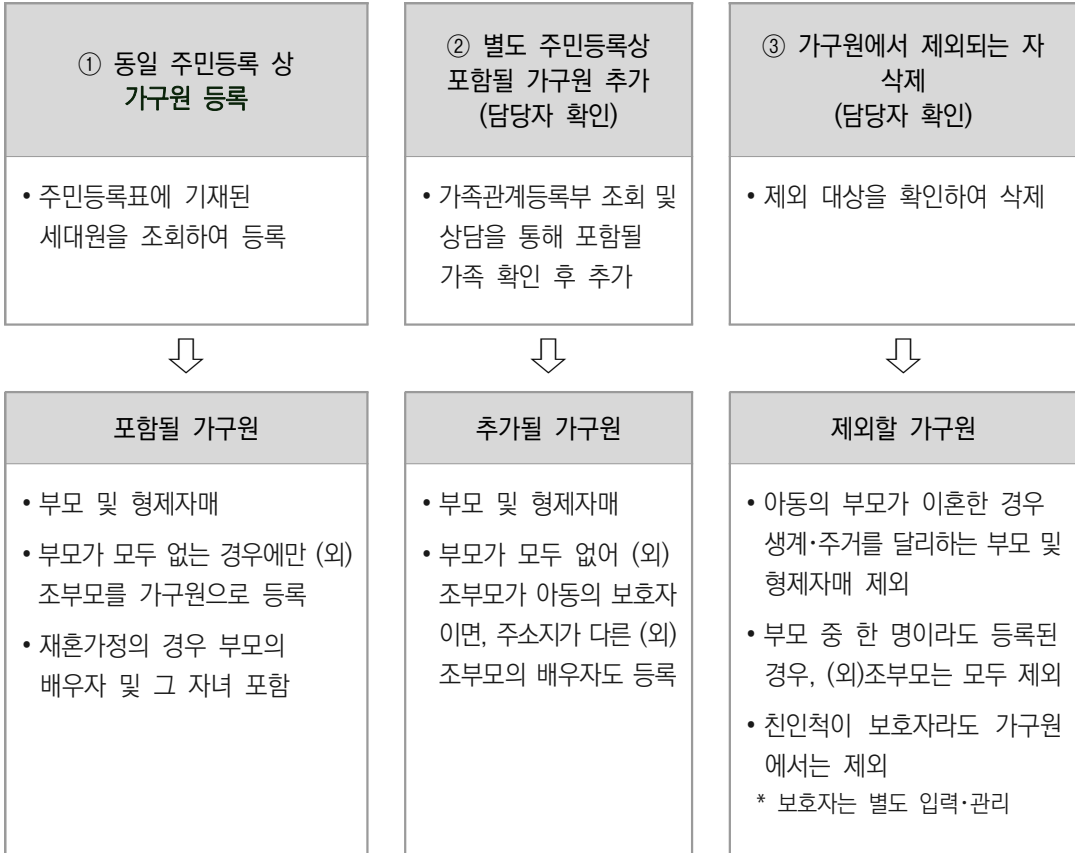
아동과 생계·주거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것으로 판단
 - 단, 부모가 양육비를 지원하고 (외)조부모 등에 아동을 맡긴 경우에는 종합적 판단 필요
 - * 예시 : 부모 이혼 등으로 주민등록 구성이 부&자녀1 / 모&자녀2 / 외조모&자녀3인 경우
 - ⇒ 모가 자녀3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을 하는 경우, 가구는 모&자녀2&자녀3으로 구성



2

가구구성 절차





〈 아동 보호 형태별 가구 구성 사례 〉

아동 보호 형태	아동의 보호자	가구원 구성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⁴⁾	부모	부모, 아동, 형제자매 (동거 여부 무관)
	(외)조부모, 친인척 등	상동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실종선고, 이혼인 경우 ⁵⁾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 아동, 형제자매* * 이혼가구의 경우,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형제자매만 포함
	(외)조부모, 친인척 등	상동
부모 동반입소 시설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 아동, 시설에 동반한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외)조부모	(외)조부모 ⁶⁾ , 아동,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형제자매
	(외)조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외)조부모 중 한 명, 아동,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형제자매
	(외)조부모 외 친인척 등	아동,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형제자매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시설장	아동 단독
가정위탁 등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포함)	위탁부모	아동,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형제자매
후견인 보호 (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 ⁷⁾	아동,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형제자매

4) 부모 중 1인 또는 모두 행방불명, 군 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인 경우도 포함

5) 한명만 있는 부 또는 모의 행방불명, 가출, 가족관계 해체 등의 경우도 포함

6) (외)조부모가 재혼한 경우에 그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자녀 및 손자녀는 제외)

7) 후견인이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해당 (부모 모두 친권 박탈(상실 등) 상태에서 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3

가족관계등록정보 조회

(1) 가족관계등록부 행정내부 발급을 통한 조회

① 상황별 조치방안

i) 신청서의 가구구성에서 부모 중 1인이라도 제외된 경우

- ☞ 부모 사망은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여 확인, 부모 이혼은 부모 중 1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여 확인

ii) 신청서에 주민등록세대를 달리하는 아동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 ☞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여 확인

iii) 보호자가 (외)조부모 또는 3촌 이내 친인척이며, 주민등록세대정보에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 ☞ 보호자 및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확인 ((외)조부모·친인척에게 아동이 가정위탁된 경우에는 별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불필요)
- ※ 기타 아동의 친권·후견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특정)을 발급받아 확인

② 행정 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수당 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속한 내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행정내부 발급의 법적근거 : 아동수당법 제7조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4 가구구성 사례

(1)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양육 책임이 있는 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거를 달리하고 생계도 책임지지 않는 등 아동과 관계가 해체된 경우

가구 상황		가구 구성 방법
가구원	상황	① 외조모가 자녀2, 자녀3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② 가구는 자녀2, 자녀3, 모로 구성 ③ 보호자인 외조모의 계좌로 아동수당 지급 * 단, 모의 가출 입증 등을 통해 외조모가 실제 보호자임을 확인할 필요
부	이혼, 자녀1 보호	
모	이혼, 가출 후 연락두절	
자녀1	4세, 부와 주민세대 동일	
자녀2	2세, 외조모와 주민세대 동일	
자녀3	0세, 외조모와 주민세대 동일	
외조모	자녀2, 자녀3 보호	

참고
부모 이혼 시, 아동 양육책임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판단 방법

- 아동과 같은 주소지에 있는 부 또는 모를 양육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모두 아동과 다른 경우 : ①조부모 등(친가)이 양육하는 경우 부에게, ②외조부모 등(외가)이 양육하는 경우 모에게 양육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아동의 부, 모, (외)조부모, 친인척 등이 각각 자신이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 결정문 등 관련 서류를 제출 요청 또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
 ※ 친권과 양육권이 나눠진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우선순위 보호자(실제 아동 양육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2)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양육 책임이 있는 부 또는 모가 사망·실종 신고된 경우

가구 상황		가구 구성 방법
가구원	상황	① 외조모가 자녀2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② 가구는 자녀2, 외조모로 구성 ③ 보호자인 외조모의 계좌로 아동수당 지급
부	이혼, 자녀1 보호	
모	사망 또는 실종신고	
자녀1	4세, 부와 주민세대 동일	
자녀2	2세, 외조모와 주민세대 동일	
외조모	자녀2 보호	

**(3) 부모 중 한 명이 사망·실종선고 됐고 다른 한 명은 관계가 해체된 경우**

가구 상황		가구 구성 방법
가구원	상황	① 외조모가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② 가구는 자녀, 부모 구성 ③ 보호자인 외조모의 계좌로 아동수당 지급 * 부의 가출 확인 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외조모가 보호자임을 확인
부	가출 후 연락두절	
모	사망 또는 실종선고	
자녀	2세, 외조모와 주민세대 동일	
외조모	자녀 보호	

(4) 부모 중 1인은 사망, 1인은 교정시설 입소하였고 외삼촌이 본인의 자녀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가구 상황		가구 구성 방법
가구원	상황	① 외삼촌이 자녀와 외삼촌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② 가구는 모&자녀 / 외삼촌&외숙모&외삼촌으로 별도 가구 구성 ③ 자녀와 외삼촌의 보호자인 외삼촌 계좌로 아동수당 지급
부	사망	
모	교정시설 입소	
자녀	2세, 외삼촌과 주민세대 동일	
외삼촌	4세, 외삼촌의 자녀	
외삼촌	자녀, 외삼촌 보호	
외숙모	외삼촌의 배우자	

(5) 주민등록 상태코드에 따른 재외국민 등이 가구원에 있는 경우

코드	코드값 의미	상세설명	아동수당 보장	
			가구원등록 (아동, 부, 모, 형, 제, 자, 매) <small>*부모가 없는 경우 (외)조부모</small>	보장 대상 (아동)
13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읍면동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자	○	○
14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국외에 30일 이상 출국할 목적으로 출국시 거주지인 읍면동에 출국 신고한 자	○	○
16	재외국민 출국자	읍면동에 출국 신고한 재외국민 중 출국하여 법무부에서 출국자로 통보받은 자	○	○
44	재외국민 거주불명자	국내거주지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자	○	○
45	현지이주자	현지이주	○	○
47	이민출국자	이민출국	○	○
49	국적상실자	국적상실자 (가구원만 해당) ※ 고유식별번호가 존재하는 가구원	○	×



5 시설입소 아동의 가구구성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조사 대상 가구원을 아동 단독으로 구성
 - 단, 보호자는 시설장으로 입력
 - 형제자매가 동반 입소한 경우에도 아동 각각을 별도 가구로 구성
 - ※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일시보호시설 등 보호자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우선 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추후 보호자 확정 시 미지급분을 함께 지급
- 부모 동반 시설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입소한 경우, 입소한 부 또는 모와 아동, 시설에 동반한 형제자매를 함께 가구로 구성
 - ※ 일시지원복지시설이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부 또는 모는 가구 구성에서 제외
- 가정위탁, 입양대상 아동(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에 한함), 후견인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시설입소 아동 제외) 등의 경우 보호자가 친인척 등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위탁부모 등은 보호자로만 입력하고, 가구 구성은 아동 및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로 구성

6 보장 가구주 및 관계 입력

- 보장 가구원의 관계는 아동을 보장 가구주로 하여 관계 입력
 - * 수급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가구주로 구성
 - 아동을 중심으로 “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형·오빠·제·언니·누이·매” 관계 입력 (그 외의 관계는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 ※ 가구주와 관계에 “자”, “손”, “외손”, “조카” 등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 통합세대주는 다른 보장과 같이 기존 통합조사표의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세대주로 입력함을 권장



참고

통합 조사표를 분리하여 가구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 통합조사표 분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서를 제출 받아 진행

① 형제자매가 아닌 아동이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 부모가 모두 없어 친인척 등이 보호하는 아동과 친인척의 자녀가 모두 아동수당 대상인 경우

〈 통합 조사표 1 〉

	조사대상 가구원	보장대상 가구원
가구주 (친인척 보호 아동)	○	○
친인척		
친인척의 배우자		
친인척의 자녀		

〈 통합 조사표 2 〉

	조사대상 가구원	보장대상 가구원
가구주 (친인척의 자녀)	○	○
부 (친인척)	○	
모 (친인척의 배우자)	○	
친인척 보호 아동		

② 형제자매가 아닌 아동들이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 부모가 각각 모두 없는 사촌관계인 손자녀 2명을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

〈 통합 조사표 1 〉

	조사대상 가구원	보장대상 가구원
가구주 (손자녀1)	○	○
조부	○	
조모	○	
손자녀2		

〈 통합 조사표 2 〉

	조사대상 가구원	보장대상 가구원
가구주 (손자녀2)	○	○
조부	○	
조모	○	
손자녀1		



7 기타 사항

(1)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아동수당 대상자 형제자매의 처리 방법

- 이혼가구인 경우, 각각 별도의 가구로 구성하여 처리
- 일반가구 경우, 먼저 신청·접수된 시군구에서 관할 아동 보장결정 처리하고 통보 또는 주소지가 다른 아동도 함께 보장결정 처리 후 통보 가능
 - * 전자결재 처리 시, 다른 아동의 시군구로 해당 사실이 행복e음 자료정비 → 변동알림으로 통보
- 신청·접수 시, 해당 가구의 다른 아동수당 대상자가 보장대상 가구원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확인
- 변동알림 받은 시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관할 아동 보장결정 처리 또는 가구구성 및 보호자 등에 대한 확인
 - 급여는 관할 시군구에서 각각 생성하여 지급



예시

A시에 주소를 둔 홍길동(2세), B시에 주소를 둔 홍길순(0세)

1) 두 아동이 동시에 A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 ① A시 담당자 : 홍길동에 대해 신청·접수→조사자 결정→보장 결정(B시의 홍길순에 대해 조사자 결정 및 보장결정에 대해 변동 알림으로 통보됨)
→ B시 담당자 : 변동알림 확인하여 홍길순 조사자결정 및 보장 결정, 그 후 급여 관리
- ② A시 담당자 : 홍길동, 홍길순 모두 보장 결정 후 홍길순의 주소지로 보장결정 여부 통보
→ B시 담당자 : 공문 및 변동알림 확인 후 가구구성 및 보호자 등에 대한 확인, 그 후 급여 관리

2) 홍길동은 기존 수급자이며, 홍길순이 출생하여 A시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 A시에서 B시로 신청서 이송, B시에서 홍길순에 대하여 신청·접수 후 보장결정
- B시에서 보장 결정하면, A시에 변동 알림으로 통보됨



(2) 조사가 어려운 가구원의 처리 방법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3) 사실혼 및 사실이혼 처리 방법

- 신청인 등이 사실혼이나 사실이혼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서 징구하여 반영
 - 신청인이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 22호) 작성하여 제출
 - ※ 타 복지 급여에 따른 사실 조사 복명서 등 존재 시, 해당 자료로 갈음
 - ※ 이·통장 확인 등의 추가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사실혼은 주거를 같이 해야 하며, 사실이혼은 주거를 달리해야 인정



참고

사실상 혼인 및 이혼

- 사실혼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생활(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관계
 - ☞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법률상 이혼 관계인 경우, 당사자들의 사실혼에 대한 신고(동의) 없이 추정만으로 사실혼 부부로 처리 불가
- 사실이혼
 - 혼인 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별거하여 양자 사이에 혼인 생활(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부 관계
 - ☞ 세대 분리되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 함께 생활 또는 거주하는 경우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이혼 불인정



(4) 미혼부모가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의 혼인이력이 없는 경우
 - 부모 모두 가구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대로 인정
 - 부모 중 한 명만 가구원으로 신청하면서 나머지 한명과 현재 관계단절이라고 주장할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 보육료카드 발급명의자 확인 등을 통해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 혼인이력이 없고 현재 별거 중인 경우 사실이혼 처리하지 않고, 통합조사표 상 가구구성 이력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해체로 처리하지 않고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미혼부 자녀, 생모의 출생미신고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처리 방법

-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존재한 경우로, 미혼부, 생모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대로 인정
- 이후 출생등록 완료시,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가족관계변경 여부 확인 후 보완·정비



Ⅲ | 수급자 결정 및 통지



1 지급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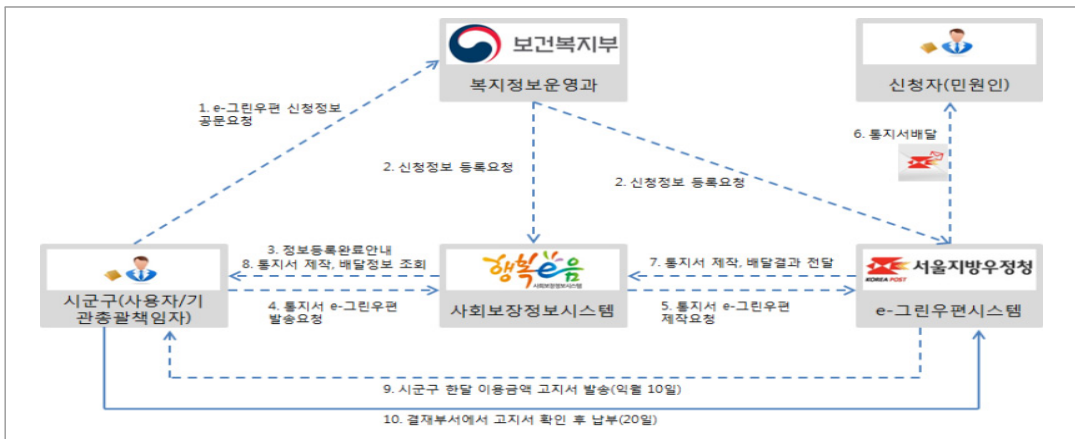
-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여부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행복e음으로 보장 결정처리
 - 필요시 현장조사결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 아동수당 지급 결정일 및 결정 내용 등을 행복e음에 입력

2 결정 통지

(1) 통지 주체 및 방법

-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보장 결정 내용을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서식2호)로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인이 통지서 발송 전 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발송 불필요





- 서면 통지(우편)* 원칙이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e-그린우편서비스로 대량 발송 가능 (서비스 신청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배달)

※ 필요한 경우 전화, 구두안내, SMS, 전자우편 통지를 병행할 수 있음.

(2) 통지 내용

- 결정 내용(적합, 부적합), 보장 구분, 급여·서비스 내용, 보장 기간,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3) 통지 기한

-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통지
 - 단, 보호자 판단·변경 등 보장결정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가능
 - * 신청 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생활실태 조사가 어려운 경우 등
- 확인 조사 등에 의해 수급자격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결정 후 즉시 통지

(4) 유의 사항

- 아동수당 지급 결정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요청할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제공
 - 단, 부득이하게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유선 연락 등)*를 받은 후 제공
 - * 행복e음 상담 내역에 동의 여부, 제공받은 자, 제공 내용 등을 기록
- 담당자는 아동수당 신청, 조사, 수급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법이 정한 보장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 외의 목적으로 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해서는 안됨.
- 신청자가 통지서 발송 전에 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읍면동에서는 철회 신청서(임의 양식)를 작성토록 하여 시군구로 이송

2024 아동수당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ART. 04

아동수당 지급

- I. 아동수당 지급 방식
 - II. 미지급 아동수당
 - III. 수급권 보호
 - IV. 아동수당 지역상품권 지급
-



I | 아동수당 지급 방식 (법 제10조)



1 아동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1) 지급 개시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 예시 : 9.29일에 신청하여 12.20일에 지급 결정된 경우, 다음연도 1월 급여 지급일에 9월분부터 총 5개월분 수당을 소급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인지 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를 거친 경우*
 -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제12조)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2) 지급 방법

-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가능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필요)

(3) 지급 시기

- 매월 25일에 지급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 말까지 지급
-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 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급여 담당자가 급여 추가 생성하거나,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 가능

2

아동수당 지급 계좌

(1) 기본 원칙

-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
 -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관리 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위해 보호자 명의 계좌로만 지급 (디딤씨앗통장 제외)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현장 수령·우편 발송 등 방식으로 지급 가능



(2)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가. 대상 아동

- ①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부모 동반시설, 3개월 미만 단기 보호 제외)한 경우에는, 반드시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그 계좌로만 아동수당 지급 (다른 계좌 불인정)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 ② 가정위탁 보호 아동(입양대상 아동의 위탁가정 보호 포함)이나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나, 희망할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도 지급 가능
- ③ 지자체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더라도, 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 (상품권 지급 불가)



참고

디딤씨앗통장 개요 (아동발달지원계좌)

- 목적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등)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매칭·적립 : 디딤씨앗통장에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나. 3개월 미만 단기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 ① 보호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의 시설 보호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 예시 : 단기 보호하는 경우가 많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 입소 (통상 단기 보호시설이 아닌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더라도 특별한 사유로 단기 보호가 예상되는 경우 포함)



- 해당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유보하고, 추후 아동의 거취나 보호자가 결정되면
그간 아동수당 미지급분까지 함께 지급
 - ※ 보호기간 예측이 어렵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아 디딤씨앗통장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시설장(일시보호시설 포함)은 아동수당 신청이 지연·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우선 신청(특히 베이비박스 아동)
- 3개월(필요 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수급아동이 여전히 시설에서 보호되거나 보호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아동수당 지급
 - *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 ② 아동의 시설 보호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나 디딤씨앗통장을 이미 보유 중인 경우
 -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아동수당 입금하거나 이미 개설된 계좌로 입금



예시 1

아동수당 수급 중인 한부모 가구에서 10.8일 부가 아동을 학대, 10.10일 아동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12.7일 아동양육시설 전원 조치된 경우

⇒ 10월분 아동수당부터 지급 유보, 12월에 아동양육시설 입소 후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3개월분 수당을 함께 지급



예시 2

아동수당 미수급 중인 아동이 '22.9.1일 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계속 보호되는 경우

⇒ '22.9.28일에 아동수당을 신청(지급계좌 미입력 가능)하고 디딤씨앗통장은 '23.1.2일에 개설되면, 1월 급여 지급일에 5개월분 수당을 함께 지급



예시 3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어 주민번호 없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만 있는 아동이 '22.9.10일 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계속 보호되는 경우

⇒ '22.9.28일에 아동수당을 신청(지급계좌 미입력 가능)하고 주민번호가 발급된 후 디딤씨앗통장이 '23.1.2일에 개설되면, 1월 급여 지급일에 5개월분 수당을 함께 지급

※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 주민번호 발급이 늦어져 디딤씨앗통장 개설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시설장은 우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추후 디딤씨앗통장 개설 후 그간 미지급분 수당 함께 지급



다. 유의 사항

- ① 아동수당 신청과 동시에 디딤씨앗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되, 추후 디딤씨앗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
 - ※ 지급계좌를 디딤씨앗통장으로 지정할 경우, 통장사본 제출
- ② 디딤씨앗통장은 한 달에 50만원을 초과한 입금이 제한되나, 아동수당의 경우 예외적으로 50만원 이상 입금 가능하므로 반드시 앞에 “아동수당”을 부기하여 지급
 - * 예 : 아동수당9월(○), 아동수당(○), 9월아동수당(×)
- ③ 가정 내에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시설 입소하는 경우,
 - 매월 15일 이전 입소 시, 그 달 수당부터 디딤씨앗통장에 지급
 - 매월 16일 이후 입소 시, 그 달 수당은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달 수당부터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3) 제3자 명의 계좌 입금:대리 수령

가. 개요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제3자 명의 계좌에 아동수당 입금 가능

나. 인정 요건 (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요)

- ① 제3자 명의 계좌 입금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
 - 보호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보호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수급자 명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도록 우선 안내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3자 명의 계좌에 입금
 - 보호자의 중증질환, 의식불명 등 거동 불가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보호자의 치매, 정신 질환 등으로 통장 개설이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② 제3자 명의 계좌 입금사유 발생 시에도,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기타 유사 위원회로 대체 가능) 심의를 거쳐야함



예시

제3자 명의 계좌 입금이 필요한 사유 확인 방법

-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의 선고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시군구·읍면동 민원 담당에게 확인 가능)
 - 압류 사실 통지서 (금융기관 통지)
 - 법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③ 거동불가 사유 발생
 - 보건소·병원 진단서, 전문의 소견서
 - 장기요양 인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④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발생
 - 치매의 경우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또는 병원 진단서 제출 요청
 - 정신질환 등의 경우 전문의 소견서, 병원 진단서 등 제출 요청

다. 대리수령 가능한

-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 대리수령 신청인에게 아동수당의 사용목적,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 안내

라. 신청 시 제출 서류

-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서식 9호)
 - * 대리수령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8호)
-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
- 제3자 명의 계좌 입금 사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4) 압류방지 전용통장 입금 (☞ “제 4편 - III. 수급권 보호” 참고)

-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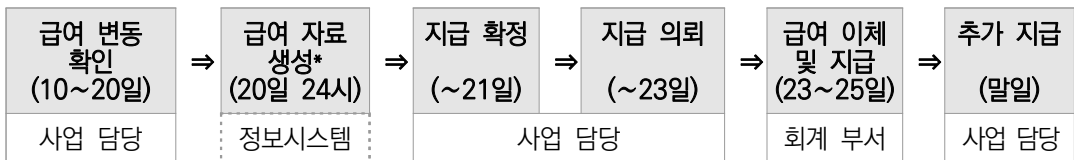
※ 아동수당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우선 자격책정하고,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서식 21호)를 발급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

(5) 현장 지급 (시행령 제9조 제5항)

-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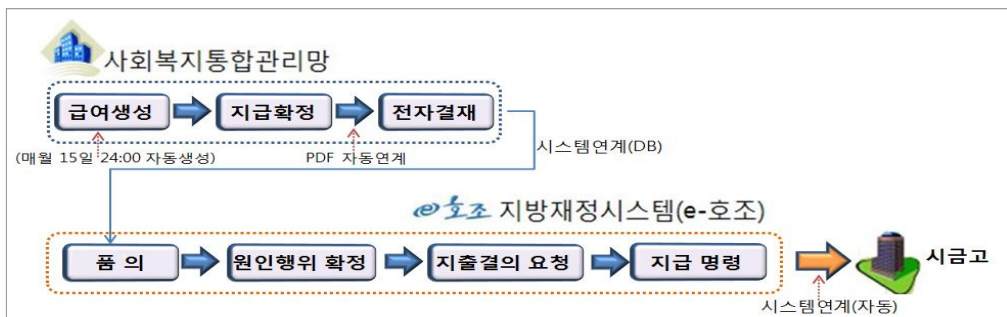
3 아동수당 지급 절차

(1) 개요



* 급여자료 생성은 당월 급여를 시스템에서 최종 확정하는 행위로, 생성이 끝난 후에는 수정·삭제 불가 (단, 지급 제외 처리는 가능), 급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단계별 처리 내용





가. 급여 변동 확인

-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 확인 및 변동사항 반영
 - * 인적사항, 출입국 기록, 지급계좌, 보호자 변경, 전출입 내역 등
 - 사업담당자는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까지 변동사항 확인 및 반영

나. 급여 자료 생성

- 매월 25일 지급되는 정기 지급분은 행복e음 자동 생성
- 정기 지급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급여이체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급여자료 생성일자를 그 전일로 조정
- 정기 지급분 생성일 이후 계좌 입력 오류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경우, 사업 담당자가 추가 생성 가능
- 정기 지급분 생성일 이후 보장 결정자는 정기 지급분과 동일한 절차로 매월 정기 지급일 이후 월말까지 수시 생성하여 추가지급 가능

다. 지급 확정

- 사업 담당자는 자동생성 처리된 급여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확정 처리 후 전자결재 요청

라. 지급 의뢰

- 결재된 급여자료(PDF 파일)를 e-호조를 통해 회계부서에 지급 의뢰

마. 급여 이체 및 지급

- e-호조를 통해 의뢰된 급여 내역은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 전송 및 급여 지급
- 양육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아동수당”이 표기 되도록 처리
 -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 유효성 확인(실명 인증) 후 지급



바. 추가 지급

-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 이후 보장 결정자는 정기 지급분과 동일한 절차로 정기 지급일 이후 수시 생성하여 지급 가능

(3) 급여 변경

가. 지급 계좌 등 단순 변경

-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보호자를 달리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18호) 제출
 - * 예시 : 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 ③ 보호자인 부의 계좌 ↔ 모의 계좌
- ※ 보호자간 계좌변경시 기존 보호자의 동의의사 확인, 미동의시 보호자변경 신청받아 조사 후 처리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함
- ※ 보호자의 이혼 등으로 가구구성 자체가 변동되는 경우, 변동사항을 행복e음에 반영하여 사후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 보호자 등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 12호) 제출 또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보호자 변경
 - ☞ “제 1편 - III. 아동의 보호자” 참고



II | 미지급 아동수당 (법 제11조)



1 개요

-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아동수당 지급
 - *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법 제2조)
- 단,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급여가 있는 경우,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절차에 따라 처리
 - ※ 수급아동과 보호자 동반 사망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없게 된 경우 「민법」 상 상속절차에 의해 지급

2 청구권자

-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 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
 - 2인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을 각각 청구 (이 경우, 보호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 청구한 사람이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간주)
 - * 단, 청구권자들이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미지급 아동수당 전부의 지급을 청구 가능



3 청구 절차

-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사망한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지급 청구
- 청구 시 구비서류
 -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서식 10호)
 - ※ 가급적 통지방범상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통지방범에 표기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회신
 -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사망 신고로 같음 가능)
 - 수급아동 사망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청구인의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8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필요 시)
 - ※ 가족관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되,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전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서류 제출 요청

4 결정 통지 및 지급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결정통지서」 (서식 11호))
 - 지급 대상자 인적사항, 청구인과 사망한 수급아동의 관계, 지급결정 금액, 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 등 안내
 - ※ 서면 통지가 원칙이나,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SMS)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으로도 가능, 필요한 경우 구두, 전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음
-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일이 포함된 달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Ⅲ | 수급권 보호 (법 제18조)



1 원칙

-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음
 -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음

2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1) 개요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은 차단되는 통장
 - * 아동수당,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 참여 금융기관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코드값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 허용하고 코드값이 없으면 입금 차단
 -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하여 (가)압류, 질권, 담보 제공, 상계, 지급 정지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 방지
 -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법으로 보호되는 통장이므로, 압류 명령서를 제시하며 압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부해야 함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 압류로 인한 생활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2) 발급 절차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서식 21호) 발급 후,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신청
 - ※ 아동수당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우선 자격책정하고,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서식 21호)를 발급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
-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있을 경우 추가 발급이 제한되므로, 아동수당 지급 계좌를 해당 계좌로 지정

(3) 급여계좌 등록

- 해당 시군구에서 급여 계좌를 변경·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매월 급여 입금
 - ※ 지급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정할 경우, 신청인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계좌 입력 시 일반통장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해당 급여 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값을 부여하여 전송

(4) 유의 사항

-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해당 복지 급여 이외에는 수급자 본인도 입금 할 수 없으므로, 카드 결제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안내
 -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환급금 등의 입금도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참고

입금 오류 발생 시, 처리 요령(은행 이체 후 입금 불능 처리된 경우)

- ① 압류방지 계좌임에도 압류 여부가 “NO”로 되어 있거나, 일반 계좌임에도 압류 여부가 “YES”로 있는 경우에는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 등 확인
- ② 오류 대상자는 e-호조에서 반납 처리
- ③ 반납 처리된 대상자를 행복e음 지방재정 연계 처리현황 메뉴와 오류현황 화면에서 조회 (오류 현황에서 변경한 계좌 정보는 1회성)
- ④ 오류현황에서 조회된 대상자를 확인하고 계좌정보만 변경 처리하여 재지급
- ⑤ 오류 발생 대상자의 “복지 급여계좌 신규·변경 신청” 화면에서 계좌정보 정정 처리



IV | 아동수당 지역상품권 지급 (법 제10조 제3항)



1 개요

- ①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계좌 입금) 원칙이나, 복지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등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 가능
 - 아동수당 사용처 및 지역 등이 제한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단,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 “제 4편 - 1. 아동수당 지급 방식” 참고)
- ② 지급 주체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제외)
- ③ 지급 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종이 또는 모바일 상품권,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상품권 지급 가능
 - 지자체가 발행 주체가 아닌 온누리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은 제외



참고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 개념 :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 효과 :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종류 : 지류형,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5.1. 제정),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조례 등



2

상품권 지급 전 준비사항

① 조례

- 공청회·여론조사 등 지역 내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제·개정 필요
 - * 기존에 포괄적인 지역상품권 조례가 있더라도, “아동수당의 상품권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정할 필요

② 인프라

- 상품권 전달 및 사용에 불편 없는 인프라 구축 필요
- 매월 급여 생성 후 수급가구에 상품권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 현장방문 수령, 유가증권 등기 발송, 모바일 상품권 전송 등
- 상품권이 아동수당의 목적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충분한 아동·육아 관련 가맹점 확보·관리

③ 예산·인력

- 상품권 발행-전달-유통-환전 등에 필요한 자체 예산 및 관리 인력 필요

3

진행 절차 및 내용

① 추진 주체

- 지역상품권 지급 계획이 있는 시군구 → 보건복지부

② 제출 자료

- ▲ 지역 주민 의견수렴 계획·결과, ▲조례(안), ▲상품권 유형·금액·전달방법, ▲인프라 현황 및 구축계획, ▲예산·인력·시스템 확충계획 등이 포함된 「아동수당 지역상품권 지급 추진 계획서」 제출



③ 기간

- 아동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시군구는 지급방법 변경 6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출 (시스템 반영 등 기간 고려)

④ 진행 절차

- 자료 제출(지자체) → 검토 및 보완 요청*(복지부) → 수정·보완(지자체) → 조례 제·개정 및 시행(지자체)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10조 제4항)

4

사후 관리

- 행복e음 내 구축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관련 기능 등을 활용하여 수령 여부 등 철저히 관리
- 미지급된 상품권의 지속적 관리 및 수령 안내 등



〈 아동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추진계획서 서식〉

구 분		주요 내용	
상품권	지급 시작 시기	○○○○년 ○○월 ~	
	종류	<input type="checkbox"/> 지역사랑 상품권 (명칭) <input type="checkbox"/> 기타 (명칭)	
	해당 상품권 운영 여부	<input type="checkbox"/> 운영 중 <input type="checkbox"/> 미 도입 (아동수당 외에 다른 사업으로 이미 도입 예정인 경우, 일자 기재)	
	가맹점 수	- 전체 ○○○○개소 - 전체 가맹점 중 아동·육아 관련 가맹점 ○○○○개소	
	전달 방식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등기 발송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전송 <input type="checkbox"/> 방문 수령 <input type="checkbox"/> 기타 (방법) * 중복 표기 가능	
대상자	전체 규모	○○○○명 (요청서 제출 월(전월) 기준, 만 8세(96개월) 미만 아동 수)	
	상품권 제외 규모 (현금 지급)	○○○○명 (대상 아동 중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 중인 아동)	
재원	급여액	10만원 지급을 위한 국비 / 지방비	국비 ○○○○백만원 / 지방비 ○○○○백만원
		10만원 초과 지급을 위한 지방비 추가 소요	상품권 ○만원 추가 시, 지방비 ○○○○백만원 추가 소요
	예산비	상품권 발행·유통·환전 예상 비용	○○○○백만원
		상품권 전달 예상 비용	○○○○백만원
지역 내 의견 수렴 결과		<input type="checkbox"/> 유 (설문조사 등 명칭, 일자) <input type="checkbox"/> 무 (계획 중인 경우, 일자 기재)	
지급 관련 조례		<input type="checkbox"/> 유 (조례명) <input type="checkbox"/> 무 (제정 중인 경우, 현 단계 기재)	
상품권 담당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과 ○○명) <input type="checkbox"/> 무 (충원 계획 중인 경우, 일자 기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상품권 관리 기능 활용 계획		<input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수행 기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직접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원기관 (명칭)	
작성자		○○○시군구청 ○○○과 직급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 추진 계획서 외에 세부 사업계획서(지자체장 결재) 반드시 별첨



〈 세부 사업계획서 필수 포함 사항 〉

□ 상품권 지급 방법·금액 등

- 지급 시작 시기
- 종류 : 지역사랑 상품권 등
- 기존 상품권 운영 현황 : 가맹점 세부 내역(아동·양육 관련 가맹점 등) 등
- 가맹점 확충·관리 계획
- 전달 방식 : 유가증권 등기 발송, 모바일 전송 등
- 금액 : 상품권 10만원, 상품권 11만원 등
- 상품권 관리 담당자 현황 및 총원 계획

□ 대상자

- 전체 규모 : 요청서 제출 월(전월) 기준 만 8세(96개월) 미만 아동 수
- 상품권 제외 규모 : 대상자 중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아동 수

□ 재원

- 10만원 지급을 위한 국비, 지방비
- 10만원 초과 지급을 위한 추가 지방비 소요
- 상품권 발행·유통·환전 관리 예상 비용
- 상품권 전달 예상 비용

□ 지역 내 의견수렴 계획 및 결과

- 공청회, 설문조사, 포럼 등

□ 관련 조례(안)

- 조례(안) 내용, 제정 일정·계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상품권 관리 기능 활용 계획

□ 사업 수행 기관 (지자체 직접, 기타 지원기관 등)

PART. 05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 I.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II.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III.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IV.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I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2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구분

(1)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목적 : 가정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
- 보호자 : 사회복지시설장이 아동의 보호자
- 유형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 입양기관 입소 아동이 해당

(2)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목적 : 비혼 출산,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피해 등의 이유로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 보호자 : 아동과 함께 시설에 입소한 부 또는 모가 아동의 보호자
- 유형 : 모·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아동이 해당



〈참고〉 아동수당 대상 아동 입소시설 종류

유형		지원 내용	관련 법
아 동 복 지 시 설 등	아동양육시설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 제공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	
	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등 제공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거주·요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입양기관	기관의 장이 입양대상 아동의 후견인이 되며, 위탁가정 미연결시 입양기관에서 일시보호	「입양특례법」 제20조
가 족 복 지 시 설 등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9조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 지원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 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생계·주거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II |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1 아동수당 신청

- 사회복지시설장*이 시설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 시설 입소 아동은 친권자·후견인 등이 있더라도 시설장이 보호자가 됨
 - 시설 종사자가 시설장의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
 - 신청 처리 시, 아동 단독 가구로 구성 (☞ “제 3편 - II. 가구 구성” 참고)
-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사본, 필요 시 시설 수급자 증명서(또는 입소 확인서)
 - ※ 베이비박스 아동 등 성분창설 전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안되어 디딤씨앗통장 개설 전이라도 시설장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 신청(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 시설 종사자가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재직 증빙 서류, 대리인 신분증 등 지참
 -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도 추가적으로 필요

2 아동수당 지급

- ① 디딤씨앗통장 입금이 원칙 (☞ “제 4편 - I. 아동수당 지급 방식” 참고)
 - 지역상품권 지급 지자체라도, 시설 입소 아동은 반드시 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
- ② 보호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의 시설 보호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 예시 : 단기 보호하는 경우가 많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 입소(통상 단기 보호시설이 아닌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더라도 특별한 사유로 단기 보호가 예상되는 경우 포함)



- 해당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유보하고, 추후 아동의 거취나 보호자가 결정되면 그간 아동수당 미지급분까지 함께 지급
 - ※ 보호기간 예측이 어려워 디딤씨앗통장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므로, 시설장은 아동수당 신청이 지연·누락되지 않도록 우선신청 필요
- 3개월(필요 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수급아동이 여전히 시설에서 보호되거나 보호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아동수당 지급
 - *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 ③ 아동의 시설 보호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나 디딤씨앗통장을 이미 보유 중인 경우
 -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아동수당 입금하거나 이미 개설된 계좌로 입금

3 아동수당 급여 관리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는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
 - ※ 시설 간 전원 조치된 아동의 경우, 변경된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관련사항 확인·반영 후 디딤씨앗통장에 아동수당 계속 입금
- 예외 1 : 시설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입소 당시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담당

〈 예시 〉 A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B시에 소재하는 경우

입소 당시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아동수당 지급·관리
A시	→	A시
B시		B시

- 예외 2 : 서로 다른 지자체 간 시설 입소 협약(MOU) 등을 체결한 경우, 입소 당시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지급 가능
 - * 예시 : A시의 아동이 B시 시설에 입소한 뒤 주소를 B시로 변경하더라도, A시에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약 체결 → 협약에 따라 A시에서 아동수당 지급·관리



4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 시설 입소 아동이 입양되면, 디딤씨앗통장 “가정 복귀”로 변경 및 계좌 유지
 - 단, 해외 입양 시 “중도 해지”
 - “가정 복귀” 선택 시, 디딤씨앗통장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
 - “중도 해지” 선택 시, 그간 적립금은 지급하되 정부매칭금은 환수
 - ※ 해외 입양되는 경우 “중도 해지”, 중도 해지시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됨을 반드시 고지 (정부매칭금 환수)
-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하여 가정 내 양육되면, 보호 구분을 “가정 복귀”로 변경하되 디딤씨앗통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
 - 시설 퇴소 시, 아동수당을 디딤씨앗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받기를 희망할 경우, 보호자 변경 신청으로 처리



참고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금을 환수하는 경우

- 디딤씨앗통장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동의 사망, 이민,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
 - 이 경우, 아동적립금은 지급하지만 정부매칭금은 환수



Ⅲ | 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1 아동수당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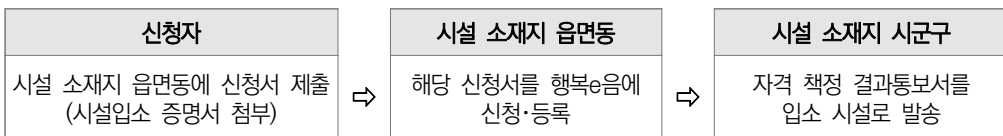
- 보호자(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가 아동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보호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기 원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 소재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 가능
 - 시설장이나 시설종사자가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
 - 신청 처리 시,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를 한부모 가족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 가구 구성
 - ※ 예시 : 부의 폭력으로 모가 아동과 함께 일시지원복지시설이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부를 제외하고 모자가구로 구성
 - ☞ “제 3편 - II. 가구 구성” 참고
-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시설입소 증명서
 - * 시설 종사자가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재직 증빙 서류, 대리인 신분증 등 지참



참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보호·안전을 위해 시설 소재지 읍면동에 주민등록 번호가 아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 가능하나,
 - 이를 통해 보장자격 부여 시 주민번호로도 별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중복자격 책정 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기 지원 여부 확인





2 아동수당 지급

-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 명의 계좌에 입금 (아동 명의 계좌도 가능)
 - 지역상품권 지급 지자체인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

3 시설 퇴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아동이 퇴소하면서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신청하면 이중 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시설장이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와 아동수당 담당자 모두에게 아동의 퇴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안내 (행복 e음 알림 서비스로 안내)



IV |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요

입양대상 아동의 아동수당 신청·지급 관련 주의사항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완료되기까지 입양과 관련된 필요조치를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됨
 - 이에 따라 입양기관 등록지에 아동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가정 주소지로는 주소지를 옮길 수 없음
 - ⇒ 입양기관 내 보호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과 동일하게 처리
 - ⇒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은 보호자(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주소지가 다르므로, 아동수당 신청·지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에 따라 입양기관에 일시보호된 아동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입양대상 아동 결정 전이라도 아동수당 지급 가능

1

아동수당 신청

- ①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가 위탁가정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위탁부모 명의 계좌 또는 디딤씨앗통장) 제출
 - ② 읍면동에서는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인이 실제로 입양대상 아동을 위탁보호 중인지 확인 후 신청서 접수
 - 급여 생성 전에 시군구를 통해 위탁현황 변동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당이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
- * 예시 : 위탁부모 A가 '19년 4월25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5월15일에 위탁부모가 B로 변경된 경우, '19.5월 급여 생성 전에 반드시 읍면동·시군구에서는 위탁현황 변동을 확인하여 아동수당을 바뀐 위탁부모 'B'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 조치



- ③ 행복e음 입력 시 아동 주소지는 입양기관 등록지로 입력되나, 관리 행정동을 위탁가정 주소지 읍면동으로 지정하여 신청 등록 처리



예시

입양대상 아동 위탁 확인서 기본양식

입양기관	본부/지부 명	
	소재지	

입양대기 아동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후견인 명 [연락처]	

위탁가정	위탁부모 명 [예비 양부모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아동 위탁 개시일	

2018년 0월 00일
0000 입양기관장

직인



2

아동수당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명의 계좌로 입금 (디딤씨앗 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지급)
 - ※ 양육수당은 입양기관 명의 법인계좌로도 입금 가능하나, 아동수당의 경우 법인계좌로 입금 불가
- 지역상품권 지급 지역의 경우라도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희망하면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
 - ※ 입양대상아동의 아동수당을 위탁모가 최초 신청한 경우, 출생월 기준으로 소급되는 아동수당을 현재 보호 중인 위탁모에게 지급
- (예시) 출생일이 2024.5.16.인 아동 A를 2024.6.2.부터 위탁모 B가 위탁개시함. 이후 위탁모 B가 2024.6.5. 아동 A의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24년 6월 아동수당이 출생월 기준으로 배수생성(5, 6월분) 됨. 이때 생성되는 출생월 소급분을 포함하여 현재 보호 중인 위탁모에게 함께 지급함

3

업무 처리방법

(1) 입양대상 아동 발생·변경 등 통보

- ① 입양기관의 장은 본부 소재지 시군구(입양 및 아동수당 담당부서 반드시 포함)에 매월·매주 입양대상 아동 발생이나 위탁가정 변경 사항을 보고
- ②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에서는 “입양대상 아동 발생보고 현황” 및 “아동의 위탁 가정 보호 소재지 변경 사항(전·출입 등)”을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 통보
- ③ 이를 통보받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는 관할 내 위탁부모의 신규 보호·변경 사항 등을 해당 읍면동에 통보



※ (매월·매주) 입양대상 아동 자격관리

- ① 공문발송 : 입양대상 아동 변경사항 보고(입양기관→입양기관 소재 시군구)
- ② 공문발송 : 입양대상 아동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위탁가정 소재지에 변경사항 안내 (입양기관 소재 시군구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 ③ 행정처리 : 입양아동 변경사항 보호자 변경·자격중지 등 행정처리(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읍면동)



중요

입양대상 아동의 위탁가정 소재지 변경 시, 시군구 간 처리 사항

- 기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아동수당 담당부서)에서는 신규 전입된 위탁가정 소재지의 시군구(아동수당 담당부서)에 주소지, 이동 날짜, 그간 급여 지급내역 등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
 - * 예시 : 입양대상 아동이 A시에서 B시로 위탁가정이 변경된 경우,
 - ⇒ A시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수당이 계속 지급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 ⇒ B시는 새로운 위탁부모에게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제출 요청

(2)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자 변경 처리

-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신규 보호·변경 등이 발생하면, 읍면동에서는 「보호자 변경신청서」(서식 12호)를 제출 요청하고 변경신청하여 가구원과 관리 행정동 등을 변경하여 아동수당 계속 지급
-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아동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아동수당 지급
 - ※ 담당자 확인 시점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위탁부모 변경 등이 있었으나 이미 아동수당 급여가 생성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아동수당 지급

(3)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된 경우

- ① 입양기관에서 본부 소재지 시군구(입양 담당 부서, 아동수당 담당부서)에 입양대상 아동 보호 종료 보고(입양아동의 입양기관 퇴소 및 입양부모에게 인도한 결과)
 - ※ 인도결과 보고서 아동보호업무 담당부서 및 아동복지시설, 생계·의료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업무 소관 부서에 아동의 시설 퇴소일, 입양일, 국내/국외입양 여부를 통보하여 해당 부서에서 입양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입양실무매뉴얼)



② 입양기관 소재지 시군구(입양업무 담당)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 생계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업무소관 부서가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

※ 공문 제목 '00년 0월 생계·의료급여/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 등 자격정비 요청(입양대상아동)'으로 통일(입양실무매뉴얼)

③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아동수당 담당)는 해당 사항을 읍면동에 통보

④ 읍면동에서는 보호자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제출 요청 및 아동수당 지급 관리

* 예비 양부모로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도중에 해당 아동의 입양이 완료된 경우, 지급계좌 변동이 없더라도 보호자 자격이 예비양부모에서 부모로 변경된 것이므로 보호자 변경절차 진행 필요



참고

입양대상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경우

• 행복e음상 입양조치일*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자동중지), 해당월까지는 보호자에게 지급

* 입양조치일 :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신청에 대한 인용심판 확정된 날

※ (절차) (아동권리보장원) 매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해외입양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양조치일자 통보 (시스템상 대상자 재확인 포함) → (정보원) 자격정보 조회 후 중지처리(해외장기체류 변동알림은 완료처리) → (지자체) 변동집계현황-인지할 일에서 확인*

* 해외입양 확인되었으나, 급여 과오지급된 경우 직권 상실처리 및 환수조치



〈 입양기관 현황 〉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홀트아동 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02-331-7033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5	051-468-4576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2층	053-756-0183	
	충청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29	042-586-1983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간석동) 홀트인천복지센터 3층	032-424-0145	
대한사회 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	02-552-7420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0번길 62	051-621-7003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보상로 906	053-756-1392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4	062-222-9349	
동방사회 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02-334-0862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81. 304호	051-469-5586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25, 4층	053-755-1077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032-502-2226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2층	042-526-3129	
	경기지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031-442-7750	
성가정입양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242	02-764-4741	시도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6	062-222-1095	허가기관
꽃동네 천사의 집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12-47	043-879-0290	
제주국내입양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근내길 42	064-758-0845	

※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는 국내입양, 국외입양 업무를 모두 수행하며, 나머지 입양기관은 국내입양업무만 수행(한국사회봉사회, 자비아동입양위탁소, 한빛국내입양상담소는 입양알선업무 중단)

2024 아동수당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ART. 06

수급자 관리

- I. 수급아동 사후 관리
 - II. 아동수당 급여액 환수
 - III. 부당 수급자 관리
-



I | 수급아동 사후 관리



1 사후관리 개요

(1) 대상

- 수급아동의 수급 자격 및 아동수당액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수급 아동 거주지, 보호자, 가구 구성, 해외 출입국 등)

(2) 확인 방법

- 수급아동 보호자의 신고, 변동내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관리
 - 공적자료를 우선 확인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등이 소명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 실시
 - ※ 미혼부, 생모의 출생미신고 자녀(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전까지 분기별로 아동 양육여부 점검(현장조사) 실시 후 서식 7호(현장조사서)에 기록 및 변동사항(출생신고 완료, 전입 전출 등) 확인조치, 필요시 아동보호팀에 연계해 아동 보호조치
 - 또한, 법원 절차 완료(유전자검사결과 포함), 타지역 전출입 등 변동사항 발생시 미혼부, 생모가 관련 사실을 아동거주지(미혼부, 생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
- 가구원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은 행복e음 또는 공적자료로 확인 또는 별도로 받은 서류는 별도 보관



참고

조사 및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 (법 제7조, 제8조)

- … 보호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7조 제1항)
- …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7조 제2항)



2

보호자의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

(1) 신고 사항 (법 제15조)

- ①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 ②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 발생 관련 사항
 - ▲ 사망, ▲ 실종 신고, ▲ 국적 상실, ▲ 난민인정 취소, ▲ 난민인정결정 철회
- ③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아동학대, ▲ 수용시설 입소, ▲ 보호조치, ▲ 일시보호조치, ▲ 시설 입소, ▲ 가정폭력, ▲ 기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 ④ 아동수당의 입금계좌 변경
- ⑥ 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
- ⑦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2) 신고 방법 및 처리

가. 신고 방법

- 수급아동의 보호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신고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 12호),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서식 14호),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18호) 등
 - 관련 증빙서류



나. 신고 사항 처리

- ①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18호)를 제출하여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 또는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즉시 승인 처리

* 예시 : 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 보호자간 계좌변경 신청시 기존 보호자 확인을 통해 계좌변경에 동의한 경우 승인처리하되, 동의하지 않는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변경신청을 받아 조사 후 처리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함

- ②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공적자료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3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1)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법 제14조)

가. 수급권 상실 사유

- 사망, 실종 신고, 국적 상실,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 수급아동 연령 초과

나. 지급 관련 기준

-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원칙
 - 사망, 실종 신고, 국적 상실,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
- 단 아동이 만 8세가 되어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만 지급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8)년 (B+1)월 출생아까지
2024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4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4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

다. 처리 절차

-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수급권 상실 내용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 상실 통지서」(서식 2호)를 보호자에게 통지 (이의신청 안내 포함)
 - * 수급권 상실 후 다시 급여를 받으려면 재신청 필요
- 실종선고 취소, 국적 회복 등 수급권 상실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 *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청 안내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



참고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수급아동 연령이 상(하)향 조정 된 경우 처리 방법

- 수급아동 연령이 만 8세(생후 96개월)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정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수급권 상실 처리 → 해당 월까지는 수당 지급
- 당초 수급아동 주민등록상 연령이 하향 조정된 경우 (예 : 만 4세 → 만 2세)
 - 아동의 실종 등 단순 사유로 인한 출생 신고 오류인 경우,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액 환수 또는 향후 지급될 급여와 상계 처리
 - 보호자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출생 신고 오류인 경우,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

(2) 아동수당 지급 정지 (법 제13조)

가. 지급 정지 사유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기산)



○ **행방불명**

- ▲ 실종신고 절차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이 경과한 자, ▲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
- 거주불명 등록 (단,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나. 지급 정지 기간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 (그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 i)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 출생일을 출국일로 보고, 국외 체류기간 산정
 - ** (참고) 국외 출생아는 귀국하여 출생신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을 거쳐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한 달로부터 소급지급 가능
 - ii)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 경찰서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찰서 등 신고 해제일 또는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단,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생사여부 확인 시 지급정지 제외)



예시

수급아동이 '22.10.15일 실종신고 접수되어, '23.2.10일 신고 해제된 경우

⇒ '22.10월과 11월은 지급, '22.12월부터 '23.2월까지 지급 정지

iii) 거주불명 등록의 경우

- 수급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가 아동수당을 받던 중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정지



예시

수급아동이 '22.10.1일부터 '23.8.10일까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 '22.10월은 지급, '22.11월부터 '23.8월까지 지급 정지

다. 처리 절차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 보호자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보호자에게 증빙서류(여권, 비행기 티켓 등) 제출 요청 (필요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열람·발급 후 확인)
 - ※ 행복e음 급여 미 생성 알림을 통해 국외 체류 의심자가 통보되는 경우, 담당자가 확인 후 급여 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처리
-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반기별로 행방불명자 등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 제출 처리
 - * 법원 : 실종·부재 청구 접수증, 실종·부재 신고 취소 신고증
 - 경찰서 : 신고 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등 실종아동전문기관 : 실종아동 조회 등
-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 행복e음 변동 자료로 시군구에 송신되므로 관계기관에 별도 확인 없이 처리 가능

라. 유의 사항

- 행복e음(변동알림)으로 급여 지급정지 사유가 통보된 경우, 시스템 급여 생성 시 시스템상 급여는 자동으로 미생성되나 변동알림 확인(처리)하여 지급정지 필요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즉시 통지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행복e음 조사표에서 재책정을 통해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통지



(3) 보호자 변경 신고에 따른 조치

가. 변경 사유

- 인적 사항 변동 : 결혼·이혼(사실혼, 사실이혼 포함), 보호자의 사망·실종신고, 행방 불명, 가족관계 해체, 입양, 원가정 복귀 등
-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기관(또는 위탁부모 등) 변경

나. 적용 시점 및 지급 반영

- 인적 사항 변동 등
 - 변동 사항이 발생한 달의 15일 기준으로 하단*를 참고하여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 담당자 인지에 의한 경우, 확인 시점 기준 적용 (보호자 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적용)
- 위탁부모 변경 등에 따른 변경 : 공적자료 확인·변경 시점 기준 적용
 - * 해당 월 15일 이전 확인(또는 신청) : 변경된 보호자에게 급여 지급
 - ** 해당 월 16일 이후 확인(또는 신청) : 해당 월은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달 급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 ※ 시설 간 전원 조치된 아동의 경우, 변경된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관련사항 확인·반영 후 디딤씨앗통장에 아동수당 계속 입금

다. 처리 절차

- 인적사항 변동 등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가구의 인적사항 변경 후 보호자 및 가구원 변경하여 조사표 재정비
-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 공적자료 확인, 보호자에게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등을 통해 변경 사유 발생여부 확인 후 변경 조치



- 변경사유 발생 확인이나 서류 보완 등으로 보호자 변경이 지연되는 경우, 우선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이후 보호자가 결정되면 그간 미지급된 수당까지 함께 지급 가능
- 위탁부모 변경, 원가정 복귀 등에 따른 변경
 - 공적자료 등 확인을 통해 보호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지방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복지시설 등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라. 유의 사항

- 보호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이 보호자에게 통지
 -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정·통지 가능



II 아동수당 급여액 환수 (법 제16조)



1 개요

○ 환수 주체 : 환수할 아동수당을 지급한 시·군·구청장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이 환수, 반환명령 조치

참고

- ▲ A시에서 아동수당을 받다가 B시로 전입하여 아동수당을 받던 중 급여정지기간에 과오지급된 A시 아동수당, B시 아동수당
 - A시에서 지급한 금액은 A시에서 환수결정하여 징수하고, B시에서 지급한 금액은 B시에서 환수결정하여 징수
 - B시는 A시에 아동수당을 환수해야함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A시에서는 환수결정을 하고 B시에 거주(주소지)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A시에서 지급한 아동수당 환수, 납부토록 고지(B시는 B시에서 지급한 아동수당 환수결정)
- ※ 전입지 등에서 환수처리가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경우 지자체 협의에 의하여 환수 가능(전출지 지자체에서 등록한 상계처리계획이 유효한 경우 전입지에서 급여생성시 상계처리)

○ 환수 절차

-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 납입고지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압류(촉탁) → 공·경매처분 → 징수금액 처리 또는 결손처분

○ 환수대상 확인 시 조치사항

-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변동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권 상실·정지 후 아동수당액 환수 결정 처리



2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1) 환수 대상

- 수급권 상실로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 지급정지 기간 중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아동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환수 대상자 결정

- 본인 신고 또는 확인 조사 등에 따라 환수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확인조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수 결정 등 관련절차 진행
- 환수 결정 즉시 환수 대상자를 반드시 행복e음에 등록·관리해야 함
- 유의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환수대상자 등록시 징수유형에 부적정·과오지급에 따른 “반환명령”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정수급 보장비용징수”를 구분하여 입력하고, 환수사유에는 해당사유를 정확히 입력

순번	아동수당 환수 사유	징수유형	
1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부정수급 보장비용징수	반환명령
2	사망		
3	장기해외체류(60일,90일 등)		
4	국적상실 및 국외(해외)이주		
5	실종, 가출, 행방불명		
6	거주불명자		
7	연령초과		
8	난민인정취소		
9	주민등록번호정정		
10	거짓,부정한방법으로 수급		
11	중복지급	입력불가	
12	담당자착오		
13	신규책정차감상계		



(3) 환수금액 산정

가. 환수 범위

-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급여액 전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

나. 이자의 가산

-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 허위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 수령, 아동을 확대하고 사망하게 한 후 아동수당 계속 수령한 경우, 아동을 실제 양육하지 않음에도(타 보호자 양육) 고의, 허위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
- 이자 가산 방법
 - 가산 기간 : 해당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
 - 적용 이자율 및 산정 방식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연 단위 복리 계산 (행복e음 자동 계산)

구분	'18	'19	'20	'21	'22	'23	'24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6%	1.8%	1.2%	0.8%	1.3%	3.5%	3.1%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부당이득 환수 시 가산할 이자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매년 1월초 행복e음에 반영하여 자동계산

다. 끝수의 처리

- 산정된 환수 금액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버림)

라. 소액 환수금 징수 제외

- 산정된 환수 금액이 3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
 - * 등기우편 등의 행정 비용(3천원)이 환수금 초과
-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받고 있어 향후 지급될 수당과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액 환수금도 징수



3

환수금 징수

(1) 징수 방법

- 전액 일시납부 원칙이나, 납부 의무자의 생활 여건이나 수급권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 납부 방법 결정
- 환수금이 25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사유 등에 해당하면 분할납부 허용 (단, 분할 납부 환수금을 3회분 이상 계속 체납 시 한꺼번에 환수 가능)
 - 환수 대상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또는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 지급할 아동수당과 환수금을 상계하는 경우
 - 재해 등으로 환수 대상자가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 일시 납부하면 환수 대상자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환수 금액별 분할 횟수 〉

환수금액(이자 포함)	분할 횟수
25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5회 이내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10회 이내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20회 이내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30회 이내
300만 원 이상 ~	36회 이내

※ 분할납부 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여건을 고려하여 위 범위내에서 금액, 기한,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1회 분할납부의 기간은 2개월 이내가 되도록 함

- 환수 대상자가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아동수당과 상계 처리 가능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 ※ 환수할 금액이 연령도래 전월까지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수가능금액 일부만 상계 통지



(2) 환수금 징수 절차

- 납부 통지 : 사전처분 통지 → 환수 결정 → 환수 결정 통지
 - 환수 결정 후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지(구두, 전자우편, SMS 등 방법으로 고지 병행 가능)
 - ※ 특히 장기해외체류 사유로 인한 환수결정시에는 전자우편, SMS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고지 병행
 - * 환수금 발생 사실,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 명시
 - ** 아동수당 수급권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 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차기 수당 지급액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환수할 금액이 연령도래 전월까지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수가능금액 일부만 상계 통지)
- 납부 독촉 및 체납 처분
 - 납부 기한 내 미납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 독촉 후에도 기한 내 미납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경매 등 처분 절차 진행
 - * 「국세징수법」제3장 강제징수(제24조~제106조) 참조
- 징수금액 처리
 - 당해년도 급여분은 당해년도 세출예산 과목으로 반납처리, 과년도 급여분은 지자체(시군구) 세외 수입으로 처리

4 소멸 시효 (법 제20조)

- 아동수당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
 - 소멸 시효는 지급되지 않아야 할 수당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중단 사유 및 재기산일

시효 중단 사유	재기산일	비 고
최초 고지 및 (최초)독촉 고지	납부기한의 다음날	독촉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최초 독촉의 경우만 효력 인정
승인 (일부납부, 총당, 납부각서 등)	승인일의 다음날	
압류, 참가 압류, 교부 청구	압류 해제일의 다음날	



5

정리보류

*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용어 변경(구 결손처분)

(1) 「아동수당법」 상 정리보류 대상 (법 제16조 제4항)

-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환수 대상자 행방불명으로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 ※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동이 물려받은 재산과 소득이 상당하여,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됨 (후견인 등 보호자가 지정된 이후 환수 절차 진행)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無資力),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환수 대상이 됨



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정리보류 사례

-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15세인 미성년으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업도 없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리보류 가능
 - * 단,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리보류 대상에서 제외됨



지방세징수법령 관련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총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삭제 <2022. 1. 28.>

(2) 정리보류 방법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일반적인 정리보류 대상이 되는지 확인
 - 일반적인 정리보류 대상이 아니더라도 「아동수당법」에 따른 정리보류 대상이 되는지 확인
- 시군구청장은 체납된 환수금의 채권이 정리보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리보류
 - * 환수금 정리보류 심사 후 7일 이내에 행복e음 상 심사결과 입력·관리
- 정리보류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징수법」이나 「아동수당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조치
 - * 단,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는 제외



Ⅲ | 부당 수급자 관리



1 과태료 부과 (법 제26조)

(1) 위반행위 확인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보장결정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위한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한 경우

*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여부, 보호자의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자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권 상실 사유 발생 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보호자 변경 사유 발생, ▲지급계좌 변경, ▲외국 국적 취득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때, ▲보호자의 이혼 등 가구원 구성 변동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제22조 관련 별표)

〈 개별기준 〉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6	12	2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6	12	2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	3	6	10



-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기준)
- ② ①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①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함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음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제외)
 - i)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
 - ii)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iii)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iv)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지 않음
 - i) 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ii)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면제를 받은 경우
-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단,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 i)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ii)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iii)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통지

- 시군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내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과태료 부과 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안내 및 제출기한, 의견 미제출 시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통보
- 시군구청장은 당사자에게 처분통지를 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 내용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정해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당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과태료 재판 진행)

* 법원에 통보 또는 미통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이전에 이의제기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외

라. 과태료 징수 절차

- 「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명시



2

벌칙 (법 제24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또는 6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
- * 수사의뢰서(위반행위가 불명확하나 부정수급 적발 필요) 또는 고발장(부적수급 확정 및 처분완료 후 사법상 제재 필요)을 작성하고, 현장점검자료, 조사결과 등 부정수급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검찰청 및 경찰서)에 문서로 의뢰

2024 아동수당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ART. 07

이의신청 등

- I. 이의신청
 - II. 이의신청위원회
 - III.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I | 이의신청 (법 제19조)



1 개요

(1) 목적

-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주체 및 대상

- 주체 :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
 - * 신청자, 보호자 또는 대리인
- 대상 :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처분
 - * 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3) 방법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아동수당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
 - 구두로 신청을 하는 경우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협조

(4)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단,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5)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서식 6호)
-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사회보장급여 결정·중지·상실 통지서 등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포함)
 -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포함)

2 절차

(1) 송부

- 읍면동으로 신청된 경우, 이의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구로 즉시 송부

(2) 접수·검토·결정

-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필요 시, 공무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현장 조사서」(서식 7호)를 작성하거나, 이의신청위원회(아동 복지심의위원회 등 다른 적합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도 가능)를 설치·운영

(3) 통보

-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각하·기각·취소·변경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서식 15호))
 - *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 가능
- 단, 통지서 발송 전에 이의신청 철회 가능 (「이의신청 철회 신청서」(서식 17호))

**3****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변경)의 효과**

- 급여신청 관련 : 신청한 달로 소급 적용
- 급여신청 이외 : 처분한 달로 소급 적용

4**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도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II | 이의신청위원회



※ 이의신청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아동수당 사업 담당부서 소관

1 목적 및 기능

- 시군구청장의 아동수당 이의신청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검토·심의

2 설치

- 시군구에 이의신청위원회 설치
 - ※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음
 -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설치 가능
 - * 명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

3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예시 : 위원장(국장), 간사(과장), 위원(외부 전문가 등)
-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외부 전문가(아동, 사회복지 분야 등)로 구성



-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청장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공동으로 위촉

4 운영

- 회의는 출석·서면 심의 방식으로 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심의안건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
- 위촉 위원의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Ⅲ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2조〕



1 기능

(1) 「아동복지법」 상 기본적인 기능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다음 각호 사항 심의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뒤야 함(아동복지법 제1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아동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및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
 5.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친권자 또는 후견인 없는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아동수당법」 상 기능

- ① 아동수당 소급지급(출생 후 60일 이내)의 기간산정 제외 관련 (법 제10조)
 -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 ☞ “제 2편 - II. 신청 방법 및 기간” 참고



- ② 보호자가 아닌 자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인정 관련 (법 제10조)
- 보호자에게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금전채권 압류, 중증질환·의식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의 대리수령 가능 여부 인정
 - ☞ “제 4편 - Ⅰ. 아동수당 지급 방식” 참고
- ③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사유 관련 (법 제12조)
- 보호자의 성품·행실이 불량하거나 아동학대 우려,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 “제 1편 - Ⅲ. 아동의 보호자” 참고
- ④ 아동수당 환수 시, 정리보류 관련 (법 제16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제 6편 - Ⅱ. 아동수당 급여액 환수” 참고
- ⑤ 이의신청위원회를 대신하여 이의신청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 ☞ “제 7편 - Ⅱ. 이의신청위원회” 참고

2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위원 임기는 2년)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함)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 * (1호)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을 가지거나, 시·도 교육청 (시·군·구의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 (2호)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아동에 대한 친권제한·일시정지 청구 등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관련 분야 경험 있는 변호사
- * (3호)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아동의 장애 여부·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정신건강과 등(권장) 아동 분야 경험 있는 의사
- * (4호)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팀장급 이상으로, 현장 실무에 능한 사람
- * (5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6호)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7호) 그 밖에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운영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직·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2호부터 8호까지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참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요

- 개요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선임 청구, 지원대상 아동 선정·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20.12.29 공포, '21.6.30. 시행)
- 구성 : 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시·도는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4

협조사항

-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총괄(담당) 부서에서는 「아동수당법」상 심의와 관련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안건 상정, 심의에 적극 협조
 - ※ 시·군·구 아동수당 담당부서 심의안건 제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담당부서 안건 취합 및 안건 상정(아동수당 담당부서 참여 및 설명 등 협조), 심의결과 통보 등

2024 아동수당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ART. 08

아동수당
국가부담금의 관리

- I.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 II. 부담금 집행 및 정산
-



I |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1 국가 부담 비율

- 국고 보조율 = 기준 보조율 ± 차등보조율
 - 기준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 차등보조율 : ① 사회복지비지수 25 이상, 재정자주도 80 미만인 지자체는 국고보조율 10%p 인상
 ② 사회복지비지수 20 미만, 재정자주도 85 이상인 지자체는 국고보조율 10%p 인하

지 표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text{① 산식} = \frac{\text{자체 수입} + \text{자주 자원}}{\text{일반회계 총계 예산 규모}} \times 100\%$ <p>②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p> <p>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p>
사회복지비지수	$\text{① 산식} = \frac{\text{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text{세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times 100\%$ <p>② 사회복지비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의 기능분류에 따른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규모를 말함</p> <p>③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p>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방비 부담 비율

- 시·도 - 시·군·구 간 부담비율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체 협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규칙 제2조 제1항)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부담률은 지자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II | 부담금 집행 및 정산



1 집행 범위

-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및 미지급 수당 급여 지급

2 주소지 변경 시, 아동수당 지급 지자체

- (매월 15일 이전 전입) 현 주소지(전입지) 시·군·구
- (매월 16일 이후 전입) 전 주소지(전출지) 시·군·구
 - * 예시 : 9월 15일 A시에서 B시로 전출하면 B시에서 지급
9월 16일 A시에서 B시로 전출하면 A시에서 지급
 - ※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행복e음에서 이미 급여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 확정된 시·군·구에서 지급

3 정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아동수당 국가부담금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실적보고서 제출

2024 아동수당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ART. 09

서식 및 부록



서식 목록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 서식]	175
(서식 2호) 사회보장급여 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 서식]	179
(서식 3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공통서식 별지 제7호 서식]	182
(서식 4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 서식]	185
(서식 5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187
(서식 6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188
(서식 7호) 현장 조사서 [공통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189
(서식 8호)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90
(서식 9호)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191
(서식 10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93
(서식 11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결정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95
(서식 12호)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96
(서식 13호)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98
(서식 14호)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99
(서식 15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201
(서식 16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2호 서식) ·	202
(서식 17호) 이의신청 철회 신청서	205
(서식 18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206
(서식 19호) 아동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서	207
(서식 20호) 아동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208
(서식 21호)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209
(서식 22호)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210
(서식 23호) 가족관계해체 사실 확인서	211



서식1호-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 _____)		휴대전화 ²⁾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1. 배우자 관계³⁾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⁴⁾: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⁵⁾: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⁶⁾: _____, _____

부양의무자 ⁷⁾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_____)

작성방법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
-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3), 4) 해당자에 한함
- 5), 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8) 동일보장가구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24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4쪽 중 2쪽)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 ⁹⁾ [] 기타 ¹⁰⁾)	
기초생활보장	[]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	※ 유의사항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보장결정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이름 :)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영유아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 장애인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 ¹¹⁾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건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전기요금	[] TV수신료 면제	[] 휴대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지역난방요금	[] 도시가스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건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자 : [] KT [] SK브로드밴드 []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등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정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유망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4쪽 중 3쪽)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7.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요금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안내 및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산업부서 등)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²⁾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9)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0)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안 내 사 항

신 청 간
-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인 경우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을 포함한 60일 이내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별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 제출서류
----------	---------

<p>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 의료급여13), 개발제한 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p>	<p>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통장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농어출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 수급권자에 한함)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p>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자산형성)</p>	<p>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서식2호-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 1.>

(5쪽 중 1쪽)

사회보장급여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아동수당 급여액 및 지급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3.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출생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인정)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단,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찾기 위한 법원 절차 진행, 미혼부의 자녀로 법원에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여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60일 기간 산정시 제외)
4.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해외출생 아동은 출생일을 출국일로 보고 국외 체류기간 산정)에는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수급아동 연령 초과 등
 - 변경 : 보호자의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발생·소멸, 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복수국적),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 정지 : 행방불명·실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자,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지 기간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아동수당법」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8. 아동수당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대 상 제 외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대상제외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기타()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 사회보장 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경우 여성 청소년이 만9세 이상 만24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 변경 사유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조제분유 추가지원 [] 기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 정 지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 중 지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2개월 연속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월이상 월차임을 연체 [] 기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 상 실 사유		[] 사망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96개월이 되는날) [] 부모급여 수급연령 초과(생후 24개월이 되는달)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미해당 [] 「난민법」 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기타()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3) **장애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5) **이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서식3호-[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6.20 > [1면]

접수번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전화번호							
신청인 (보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취업 상황		태		보호상태							
보장 신청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보장(<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제출서류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표기함		직업종류		직업		직종		직업형태		직장명		전화번호		외로보장		보장유형	
구분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 질병)	간접소득 (경월, 장애, 질병)	직업종류	직종	직업형태	직장명	전화번호	보장유형	외로보장	보장유형				
가구원		의																	
부양 의무자		의																	
조사 결과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부양 의무자 성명)		<input type="checkbox"/>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능력 상실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능력 상실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능력 상실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능력 상실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능력 상실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능력 상실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능력 상실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철용품))



[2면]

성명	사업소			재산소			기타소			보장기관 확인소	
	근로소	농업소	임업소	아업소	기타사업소	임대소	이소	연소	공적이전		사적이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성명	건축물	토지	선박/항공기	어업권/임목재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회원권 등	동산		
	□건물(m ² , 천원) □주택(m ² , 천원) □차량(m ² , 천원) □선박(대, 천원) □항공기(대, 천원) □기타(m ² , 천원)	□노(m ² , 천원) □밭(m ² , 천원) □대지(m ² , 천원) □임야(m ² , 천원) □기타(m ² , 천원)	□선박(대, 천원) □항공기(대, 천원)	□어업권(천원) □임목재산(천원)	□승차권(천원) □자동차() □차량번호() □배기량(cc) □용도()	□정·월세보증금(천원) □상가보증금(천원) □기타(천원)	□예금·적금(천원) □보험(천원) □주식(천원) □현금·수표·어음 등 (천원)	□회원권(천원) □양품권(천원) □조합원주권 (천원) □기타(천원)	□가족(머리 천원) □종교·양육(천원) □가족·기부 (천원) □기타(천원)		
기초공제액											
성명	규모·특별 급여·지출	장애인	학병	근로·사업소	재 산 금 제	성명	장기저축	생활준비금	추가기본공제	경로연금부채 (저소득노인)	
	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성명	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개인간 부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천원	

297mm × 210mm (일반용지 60g/㎡(제철용문))



2024년 아토피수당 사업안내

주거실태	<input type="checkbox"/> 자가(전원) <input type="checkbox"/> 임대(무허가주택소유관리대상 등재자) <input type="checkbox"/> 전세(무임차(전세사용대차) <input type="checkbox"/> 부분무임차(부분사용대차)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가 인정 <input type="checkbox"/> 전세(보증금 전원) <input type="checkbox"/> 월세(월 전원) <input type="checkbox"/> 보증부월세(보증금 전원, 월 전원)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전원) <input type="checkbox"/> 가정위탁 <input type="checkbox"/> 보정기관 제공주거 <input type="checkbox"/> 그룹홈 <input type="checkbox"/> 기타(음막, 비닐하우스 등)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개 축 <input type="checkbox"/> 긴급보수 <input type="checkbox"/> 편의도모보수 <input type="checkbox"/> 도배 등 환경개선 <input type="checkbox"/> 기타()
건축상태	<input type="checkbox"/> 월세임차료 <input type="checkbox"/> 유자수선비(현금여, 점검수선) <input type="checkbox"/> 전세자금대여 <input type="checkbox"/> 주거인정지원비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제외 <input type="checkbox"/> 안전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input type="checkbox"/> 가족생활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관계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직업 <input type="checkbox"/> 생활환경 및 권익보장 ()
가구유형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빌라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급여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가구유구	<input type="checkbox"/> 가구 <input type="checkbox"/> 가구 <input type="checkbox"/> 가구 <input type="checkbox"/> 가구 <input type="checkbox"/> 가구
보장구분	<input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재산대상 <input type="checkbox"/> 소득액 <input type="checkbox"/> 공제액 <input type="checkbox"/> 소득평가액 <input type="checkbox"/> 재산총액 <input type="checkbox"/> 인정부채액 <input type="checkbox"/> 공제액 <input type="checkbox"/> 순재산액 <input type="checkbox"/> 재산대상 <input type="checkbox"/> 재산대상재산액 <input type="checkbox"/> 소득환산액 <input type="checkbox"/> 원 <input type="checkbox"/> 원 <input type="checkbox"/> 원 <input type="checkbox"/> 원 <input type="checkbox"/> 원 <input type="checkbox"/> 원 <input type="checkbox"/> 원 <input type="checkbox"/> 원
보장기준	<input type="checkbox"/> 소득(18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연금(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임신 <input type="checkbox"/> 임신 <input type="checkbox"/> 실직·미취업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한부모 <input type="checkbox"/> 사망실태 <input type="checkbox"/> 저임금·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양육·간병·보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장애이보육료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료(0~4세)·유아교육비(3~4세) <input type="checkbox"/> 만5세이하 보육·유아교육 <input type="checkbox"/> 장애이보육료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이동모국 <input type="checkbox"/> 병과 후 보육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이보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아동수당
이동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건강지원 <input type="checkbox"/> 학업지원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 <input type="checkbox"/> 상담지원 <input type="checkbox"/> 상담지원 <input type="checkbox"/> 법률지원 <input type="checkbox"/> 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지원()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부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기출 <input type="checkbox"/> 부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사망·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기출·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장애 <input type="checkbox"/> 부모장애 <input type="checkbox"/> 부모폐질 <input type="checkbox"/> 부모이혼 <input type="checkbox"/> 부모노령 <input type="checkbox"/> 부모복역 <input type="checkbox"/> 기타()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사망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기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유기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생사불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기부역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미혼부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선천성·유전성·약물중독, 출산시 의료사고, 원인불명, 기타 <input type="checkbox"/> 후천성·질병, 퇴행성장애, 영양부족,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상, 기타 사고, 음향영상난청, 미상, 기타
노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식4호-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갑-1) <개정 2022.7.1>

년도/분기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세대주						
세대주 및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변동사항					주소 변동사항					전입일자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변동일자	변동사유	주소	전화번호											
가구원 사항																		
구분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가구원별 보장구분	가구원별 지원급여	복지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자 산											
							개인별소득		소득합계		재 산							
보장 가구	본인						전가구원 소득액		건축물	토지 어업권/ 임목재산	공 제	장기저축		재산총액				
															소득공제액	자동차	금융기관	인정부채액
							1인당평균 소득평가액	임차보증금	동 산	임대보증금	소득인정액							
												회원권등	개인간부채					
							보증구분사항											
내 용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자활지원, 노숙인)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아동수당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노인복지 (기초연금)									
보장 기간	개시일																	
	중지일																	
	정지일																	
	상실일																	
보장유형(등급)																		
보장가구원수																		

210mm×297mm(백상지)(80g/㎡)



(을-5)

관리번호					보호자		
아동수당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	지급개시일	지급정지일 및 지급정지 사유	상실일 및 상실사유	수급사항		
					가구유형		보호유형
					[] 부모 [] 한부모 [] 단독 [] 조손 [] 친인척·제3자	[] 시설보호 [] 가정위탁 ([]친인척 []조손(대리) []일반) []입양대기 []기타	
이력	변동 내역	인적사항 변동일 및 사유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4회차 : [] 5회차 :	이의신청	사유	[] 수급 미해당 [] 아동수당급여액 [] 수급권 상실 및 정지 [] 부당이득 환수 [] 기타	
					결과	[] 인용 [] 기각 [] 각하 [] 기타	
				부당이득	사유	[] 사망 [] 해외체류 90일 [] 국적상실 [] 기타	
					금액		
		환수	[] 환수완료 [] 환수중 [] 미환수 [] 기타				
	보호자 변경이력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4회차 : [] 5회차 :	과태료 부과	금액	[] 30,000원 [] 60,000원 [] 10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사유	[] 거짓자료 제출 [] 조사질문 거부·방해 또는 기피, 거짓답변 [] 수급권 상실사유 발생 미신고 [] 기타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5호-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 1.>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소재지)			
비용(부당이득) 납부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수급자·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부양의무자	[] 기타()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환수(반환) 사유				
환수결정액	원	납부장소		
기 납부액	원			
납부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및 제47조, 「아동복지법」 제61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의료급여법」 제23조, 「주거급여법」 제20조, 「아동수당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에 따라 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안내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사·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사·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사·도교육감(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 결정이 있음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국민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6호-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1. 1.>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리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 지 된 사 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구 비 서 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7호-공동서식[별지 제16호서식]

현 장 조 사 서	
조사 대상	
조사 목적	
조사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조사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조사의 범위	
관계 법령	아동수당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출자료	
기타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직인 </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8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11.)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지급 대상 아동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내용	「아동수당법」 제6조제1항·제11조·제12조제1항·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제9조·제10조의2제1항·제11조제1항제4호, 제15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2항제4호·제10조제3항·제11조제1항제4호·제13조제4항·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의 변경 신청,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보호자 변경의 신청, 수급권의 변경·상실 등에 대한 신고, 이의신청의 위임		
대리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 아동수당의 신청, []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의 변경 신청, []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 보호자 변경의 신청, [] 수급권의 변경·상실 등에 대한 신고,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아동의 보호자(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9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별도안내
수급아동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아동수당 입금 희망 계좌:	<input type="checkbox"/>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 <input type="checkbox"/>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개월간)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급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을 위한 아동수당 입금계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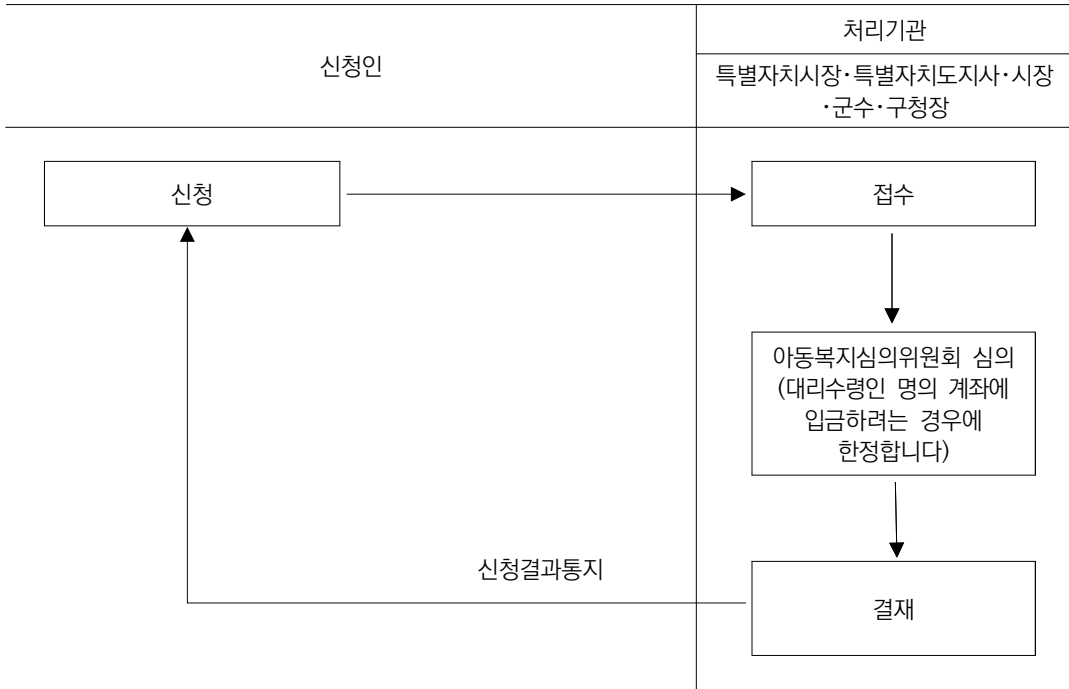
- 수급아동 보호자와 대리수령인(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 의 사 항

아동수당은 수급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0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청구권자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대리인	보호자가 여럿인 경우 ()명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기타()				
미지급 아동수당 내역	사망자(수급아동)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청구액	미지급기간 ()개월 천원 [년 월 - 년 월]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선정	
			전화번호: 휴대전화:	선정일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아동수당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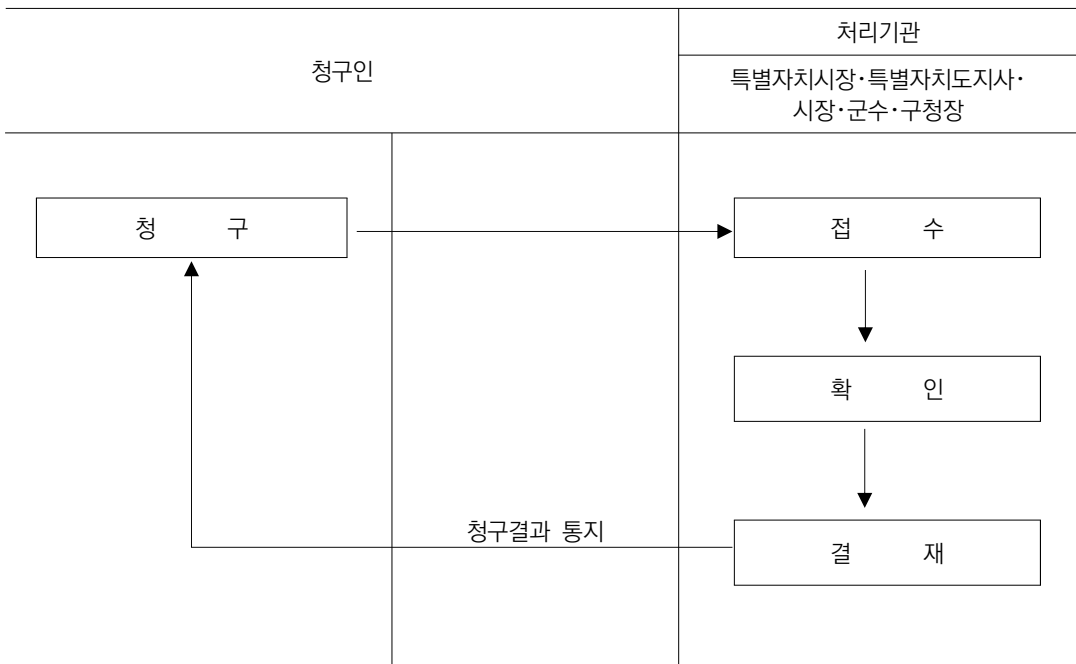
기재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부합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2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	------	------	---------------------------

수급아동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	--------

변경 전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아동과의 관계
	주소		

변경 후 보호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아동과의 관계
	주소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보호자 변경사유	[] 변경 전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변경 전 보호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우 []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 수급아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변경 전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변경 전 보호자의 성품·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 그 밖에 변경 전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_____ [] 문자 메시지 [] 기타()
------	--

「아동수당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호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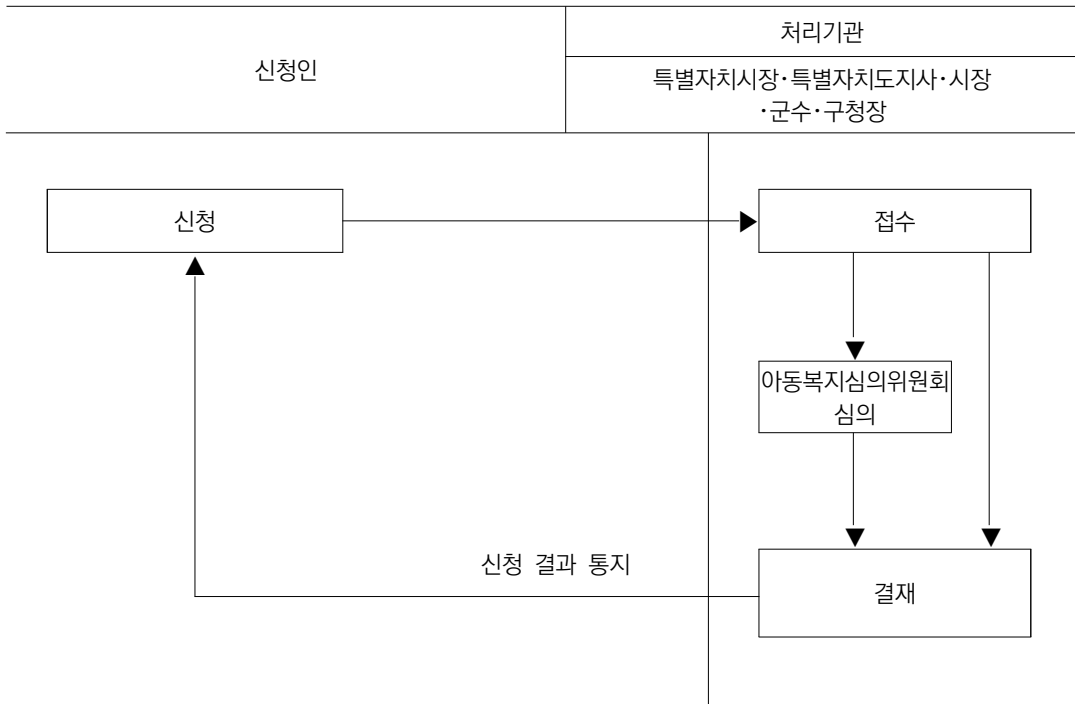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 의 사 항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3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

받는 사람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급아동	성 명	생년월일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결 과	<input type="checkbox"/> 변경적합		
	<input type="checkbox"/> 변경부적합 (사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안내사항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수급아동은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기간(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동안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아동수당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4호-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수급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아동 보호자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신고사유	1.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급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수급아동의 귀국 등 위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고 사유 발생일	
	2.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 []수급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수급아동의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기타()		

「아동수당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또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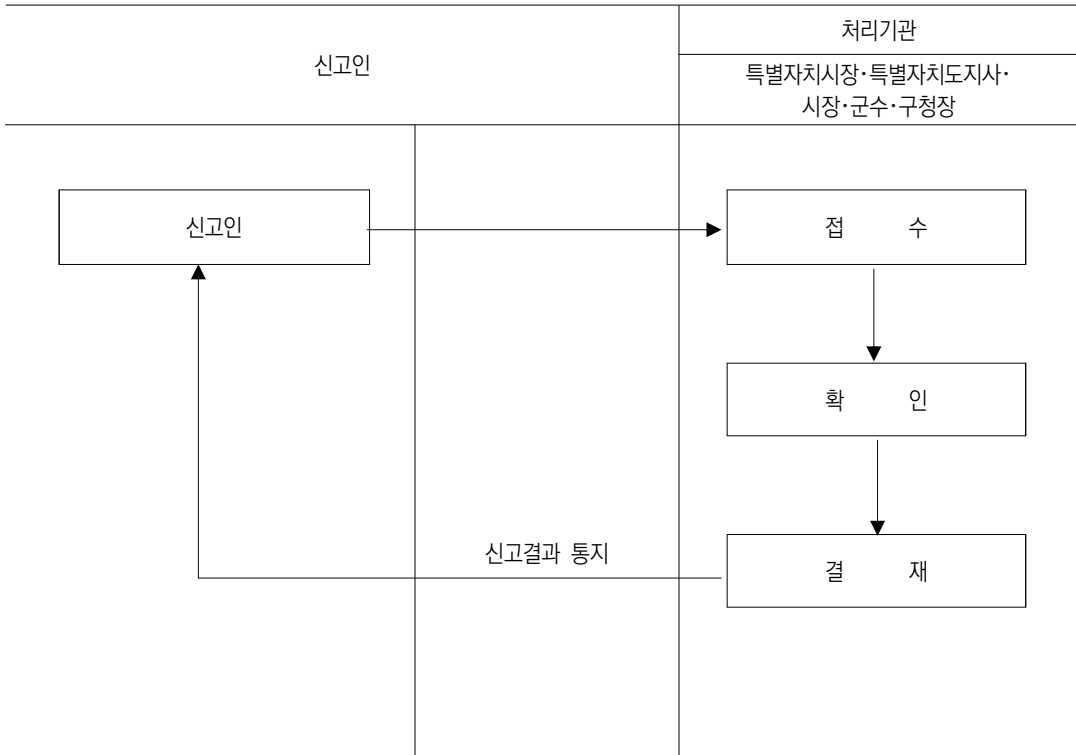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16호 -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3쪽 중 1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의 관계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출생자	성명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출산자와의 관계
	본인			[]에 []아니오		
배우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지방자치 단체서비스 (지자체별 작성)	출산 지원금	[] 둘째자녀(이름:) [] 셋째자녀(이름:) [] 넷째자녀 이상(이름:)
	출산용품교환권	수령지 주소 :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
	다동이행복카드 (신분확인용)발급	카드 수령지 주소 : ※ 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
	모유수유 클리닉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2-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국기초 []차상위 []한부모 []기타) [] 조제분유([]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기타)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구분 ※ 첫만남 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작성	[] BC카드(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일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3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당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초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자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호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4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3쪽 중 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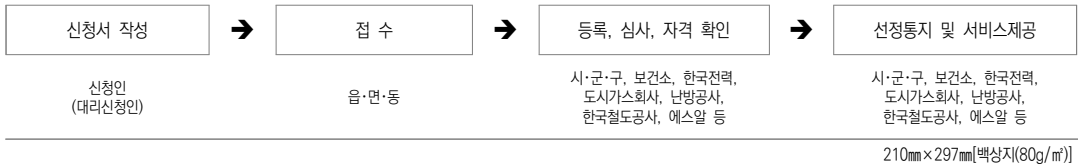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서식17호

이의신청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철회 사유	철회 사유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철회자와의 관계	

「아동수당법」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신고 철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아동수당법 제1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철회하는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8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보호자와 관계 (대리인의 경우)				
복지 급여 계좌 변경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p>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9호

아동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서

수신 : ○○○ 읍·면·동 주민센터장

제목 : 아동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

거주불명 등록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연락처	집 (사무실)	
		실제 거주지		H·P	
<p>※ 행정상 관리주소 : 거주불명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 기재</p> <p>※ 실제 거주지 : 신청 접수시 상담내역에 의거 실제 거주지 읍·면·동 관내의 구체적인 거주지역을 적시하여 기재</p> <p>위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호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아동수당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읍·면·동)의 아동수당 수급자입니다.</p> <p>향후 급여 지급 등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오니, 매월 15일까지 귀 읍·면·동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근거: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하신 후, 그 결과를 아래 FAX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담당자(공무원) : 직급 성명 연락처 : FAX :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읍·면·동 주민센터장 (인)</p>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0호

아동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수신 : ○○○ 읍·면·동 주민센터장

제목 : 아동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

거주불명 등록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연락처	집(사무실)	
		실제거주지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H·P	
기타 생활상태					

- ※ 행정상 관리주소 : 거주불명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 기재
- ※ 실제 거주지 : 수급자로 결정(변경신고)된 후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면·동에서 통보한 실제 거주지 기재
- ※ 실제 거주지 거주여부 : 실제 거주지에 수급자 본인의 거주여부를 파악하여 ○, ×로 표시하고, 거주지가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기재
- ※ 기타 생활상태 : 친·인척 왕래, 기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기재
- ※ 유의 사항 :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과 개인정보 보호측면 등을 고려하여 거주사실 등 파악 시 안부를 묻는 형식으로 조심성 있게 접근하여 진행(오해할 만한 불필요한 질문 삼가)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아동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의 거주사실 파악 결과를 통보합니다.

거주확인기관 : ○○○ 읍·면·동 주민센터

확 인 자 : 직급 성명 ○○○ (서명)

 년 월 일

○○○ 읍·면·동 주민센터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2호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신청자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p>본인은 배우자 _____와 _____년부터 ____년째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혼인,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관계이며, 추후 「아동수당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자로 보장비용징수 및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수급자)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p>		
<p>상기와 같이 사실상 혼인(이혼) 관계임을 확인합니다.</p> <p>확인자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관 계 : _____ 생 년 월 일 : _____ 연 락 처 : _____ 주 소 : _____</p> <p>확인자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관 계 : _____ 생 년 월 일 : _____ 연 락 처 : _____ 주 소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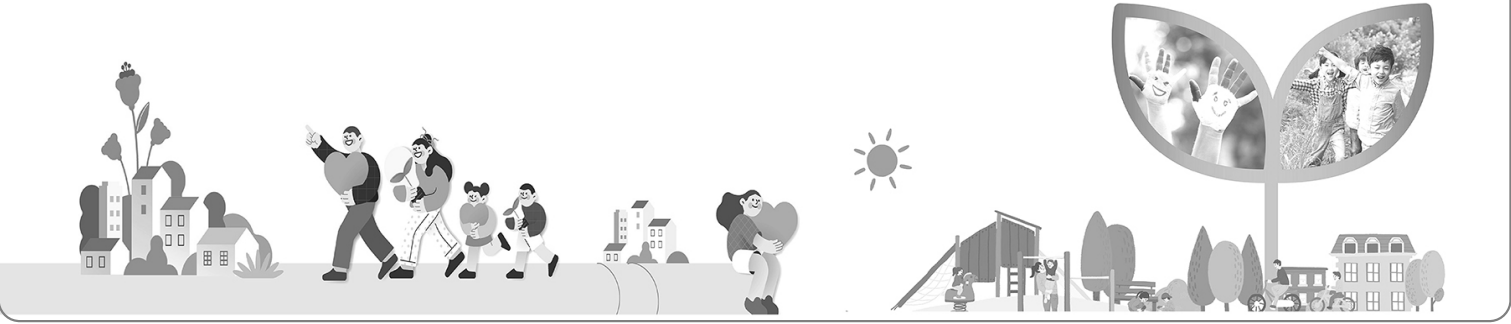
부록

아동수당법령집

목 차

◆ 아동수당법·시행령·시행규칙	217
● 아동수당법 시행령 별표	291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95
◆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311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317

아동수당법·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223	제1조(목적)223	제1조(목적)223
제2조(정의)223		
제3조(국가 등의 책무)224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225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225	제2조 삭제 <2019. 3. 27.>225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226	제3조 삭제 <2019. 3. 26.>226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내용· 방법 및 절차 등)226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227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227	제4조(대리인)227
제7조(조사·질문 등)229	제5조 삭제 <2019. 3. 26.>229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228
	제6조(조사·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229	



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
제8조 삭제 <2019. 1. 15.>234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234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236	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232 제8조 삭제 <2019. 3. 26.>234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236 제10조(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242 제10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245	제6조(현장조사서)232 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234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37 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238 제9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241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246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246	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246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249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250	제11조(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249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253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253	제12조(지급 정지의 절차 등)253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254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255	
제15조(신고)255	제15조(신고 방법)255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258	제16조 삭제 <2019. 3. 26.>257	제13조(신고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256
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261	제17조(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258	제14조(환수금의 분할납부)258
	제18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261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262		
제19조(이의신청)262		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및 운영)262
		제16조(공통서식)264
제5장 보 칙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제20조(시효)265 제21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66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270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270	제19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266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68 제21조(업무의 위탁)271	
제6장 별 칙		
제24조(별칙)272 제25조 삭제 <2019. 1. 15.>272 제26조(과태료)272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272	
부 칙273	부 칙273	
	별표291	부 칙273 별지서식295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제 정 2018. 3.27., 법률 제15539호 일부개정 2019. 1.15., 법률 제16249호 타법개정 2019.12. 3., 법률 제16737호 일부개정 2021.12.14., 법률 제18579호 일부개정 2023. 6.13., 법률 제19455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p>	<p>제 정 2018. 5.21., 대통령령 제28895호 타법개정 2018. 9.18., 대통령령 제29180호 일부개정 2019. 3.26., 대통령령 제29661호 타법개정 2020. 5.19., 대통령령 제30683호 타법개정 2021. 6.29., 대통령령 제31843호 일부개정 2022. 2. 3., 대통령령 제32384호 일부개정 2023. 9.12., 대통령령 제33715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정 2018. 6. 20., 보건복지부령 제578호 일부개정 2019. 3. 27., 보건복지부령 제621호 일부개정 2022. 2. 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2.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p> <p>3.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p> <p>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p> <p>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p> <p>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2021. 12. 14.></p> <p>② 삭제 <2019. 1. 15.></p> <p>③ 삭제 <2019. 1. 15.></p> <p>④ 삭제 <2019. 1. 15.></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6. 13.> [제목개정 2019. 1. 15.]</p>	<p>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제2조 삭제 <2019. 3. 27.></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1. 12. 14.></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p>	<p>제3조 삭제 <2019. 3. 26.></p> <p>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본조신설 2023. 9. 12.]</p>	<p>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내용·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 3. 27., 2022. 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아동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매년 1월 31일 <p>②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1. 12. 14.></p> <p>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p>	<p>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p> <p>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p>	<p>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2. 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제4조(대리인) 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장애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삭제 <2019. 1. 15.></p> <p>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p>	<p>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2022. 2. 3., 2023. 9.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9. 3. 26.> 2.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p>②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p>	<p>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p> <p>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3. 27., 2022. 2. 11.> ② 삭제 <2019. 3. 27.> ③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2. 11.> ④ 영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수당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수당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수당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제7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 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p>	<p>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2. 2. 3.></p> <p>제5조 삭제 <2019. 3. 26.></p> <p>제6조(조사·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은 신청조사·질문과 확인조사·질문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6.></p> <p>1. 신청조사·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p>	<p>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 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p>	<p>하여 실시하는 조사·질문</p> <p>2. 확인조사·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질문</p> <p>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질문</p> <p>나. 수급아동의 아동수당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질문</p> <p>② 제1항 각 호의 조사·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p> <p>1. 신청조사·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p> <p>2. 확인조사·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p> <p>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p> <p>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조사</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청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9. 1. 15.>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자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자료, 해외이주포기신고 자료 및 영주귀국신고 자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계획에서 확인조사·질문을 실시하는 시기로 정하였을 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확인조사·질문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질문의 기본방향 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 및 절차 3. 조사·질문의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4. 삭제 <2019. 3. 26.> 5. 삭제 <2019. 3. 26.>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확인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p> <p>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 신고 및 「민법」 제 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p> <p>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아동학대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p> <p>8.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p> <p>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p>	<p>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법 제 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 3. 26.></p> <p>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p>	<p>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7조제3항에서 “조</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1. 12. 14.></p> <p>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가</p>	<p>레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p> <p>2.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p> <p>3.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p> <p>4.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p> <p>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 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p> <p>6. 삭제 <2019. 3. 26.></p> <p>7. 삭제 <2019. 3. 26.></p> <p>8. 삭제 <2019. 3. 26.></p> <p>9. 삭제 <2019. 3. 26.></p> <p>10. 삭제 <2019. 3. 26.></p> <p>11. 삭제 <2019. 3. 26.></p> <p>12. 삭제 <2019. 3. 26.></p>	<p>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16조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서를 말한다.</p> <p>1. 조사기간</p> <p>2. 조사범위</p> <p>3. 조사담당자</p> <p>4. 관계 법령</p> <p>5. 조사 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p> <p>6. 그 밖에 조사목적 등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p> <p>⑦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 삭제 <2019. 1. 15.></p> <p>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 등을</p>	<p>13. 삭제 <2019. 3. 26.> 14. 삭제 <2019. 3. 26.> 15. 삭제 <2019. 3. 26.> 16. 삭제 <2019. 3. 26.> 17. 삭제 <2019. 3. 26.> 18. 삭제 <2019. 3. 26.></p> <p>제8조 삭제 <2019. 3. 26.></p>	<p>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9. 1. 15.></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p> <p>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p>	<p>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p>	<p>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한 확인조사·질문의 결과 아동수당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제16조제4호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1. 12. 14.></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p> <p>2.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 등에 대한 결정 통지: 제16조제5호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정지(상실)·변경 통지서</p> <p>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認知)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②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p>	<p>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p> <p>2.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p> <p>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①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위원회(이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p>③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을 받</p>	<p>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아동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아동수당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p>	<p>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아동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수급아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리수령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p> <p>⑥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p> <p>1.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2.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제9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p> <p>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현금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으로 변경하거나 보육서비스이용권등에서 현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에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p>	<p>제10조(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p>	<p>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p> <p>③ 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2. 2. 11.]</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p>	<p>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 2. 3.></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 상품권의 지급 방법·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수당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수당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수당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④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p>	<p>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 2. 3.></p> <p>[제목개정 2022. 2. 3.]</p> <p>제10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5항에</p>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수당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수당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수당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2021. 12. 14.)</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14.></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p> <p>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①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이하 “미지급 아동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p>	<p>따른 아동수당을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2. 2. 3.]</p> <p>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p>	<p>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p> <p>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p>	<p>당하는 서류를 말한다.</p> <p>③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일하게 나눈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들</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p> <p>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47조</p>	<p>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미지급 아동수당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1조(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려는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p> <p>1.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수급아동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p> <p>2.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3. 그 밖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p>	<p>하나에 해당하는 서류</p> <p>2.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3.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아동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3. 수급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4.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p>경 사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p> <p>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폭·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p> <p>6. 그 밖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p>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p>	<p>제12조(지급 정지의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16조제6호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에 따른다.</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급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p>	<p>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3. 26.></p> <p>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급권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p>제15조(신고)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p>	<p>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를 말한다.</p> <p>제15조(신고 방법)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한다. 다만, 제2호(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2. 제14조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삭제 <2019. 1. 15.>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수급아동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전문개정 2019. 3. 26.]</p>	<p>제13조(신고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 변경 사유가 발생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 삭제 <2019. 3. 26.></p>	<p>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아동수당의 입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 4.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p>② 영 제15조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 제7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9. 3. 27.></p> <p>③ 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수당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수당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수당법 시행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 	<p>제17조(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p>	<p>를 말한다. <개정 2019. 3. 27.></p> <p>④ 영 제15조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3. 27.></p> <p>제14조(환수금의 분할납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2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수금이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분할납부 대상자”라 한다)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분할납부 대상자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급된 경우</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아동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아동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을 할 수 있다.</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p>	<p>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하고, 이자의 계산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의 납입고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p> <p>③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p> <p>④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p>	<p>가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p> <p>3. 환수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분할납부 대상자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p> <p>4.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p> <p>② 분할납부 대상자는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기한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분할납부 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분할납부 금액, 1회</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미만인 경우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無資力),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분할납부의 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분할납부의 기한은 2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수금(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2. 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3. 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4. 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5. 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할납부 대상자가 제3</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p>	<p>제18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의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수금의 발생 사실 2. 환수금의 금액 3. 환수금의 납부기한 4. 환수금의 납부기관 5. 이의신청 방법 	<p>항에 따라 정해진 환수금을 3회 이상 분할납부의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p> <p>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p> <p>제19조(이의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p>	<p>6. 그 밖에 아동수당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독촉을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및 운영)</p> <p>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제16조제8호에 따른 이</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2. 11.></p> <p>1. 제5조제1항 및 제9조의2제2항에 따</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 칙</p> <p>제20조(시효)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p>		<p>른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p> <p>2. 삭제 <2019. 3. 27.></p> <p>3.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현장 조사서</p> <p>4.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p> <p>5.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정지(상실)·변경 통지서</p> <p>6.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p> <p>7.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서</p> <p>8.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의신청서</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p> <p>제21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제19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하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료·정보의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관리·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3. 삭제 <2019. 3. 26.> 4. 제21조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p> <p>5. 아동수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분석 및 제공 등의 정책지원</p> <p>6. 그 밖에 아동수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② 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p> <p>③ 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를 통한 방식으로 기록·관리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p> <p>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9. 3. 26.> 5. 법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자의 변경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공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p> <p>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p>	<p>10.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독촉·징수에 관한 사무</p> <p>11. 법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p> <p>12. 제19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다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p>	<p>제2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5.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삭제 <2019. 3. 26.> 3.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 칙</p> <p>제24조(벌칙) ① 삭제 <2019. 1. 15.>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5조 삭제 <2019. 1. 15.></p> <p>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p>	<p>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부 칙 <제15539호, 2018. 3. 2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p>	<p>부 칙 <제28895호, 2018. 5. 2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아동수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영 시행일부</p>	<p>부 칙 <제578호, 2018. 6. 2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부칙 제3조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p>	<p>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p>
<p>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p> <p>②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 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를 포함한다)</p>	<p>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이 영 시행 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다.</p> <p>부 칙 <제29180호, 2018. 9. 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부터 제17조 까지 생략</p> <p>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6까지</p>	<p>제3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위한 준비행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서면을 별지 제9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p> <p>부 칙 <제621호, 2019. 3. 27.>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863호, 2022.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2.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유아를 포함한다)</p> <p>3.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아이를 포함한다)</p> <p>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지원대상자(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제공을 받고 있지 아니한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p>	<p>생략</p> <p>㉗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p> <p>㉘부터 ㉚까지 생략</p> <p>제19조 생략</p> <p>부 칙 <제29661호, 2019. 3. 26.></p> <p>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30683호, 2020. 5. 19.></p> <p>(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
<p>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6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지급신청자(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질문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p> <p>부 칙 (제31843호, 2021. 6. 29.) (아동복지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신청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p>	<p>부 칙 <제32384호, 2022.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33715호, 2023. 9. 12.> 이 영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p>	



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
<p>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p> <p>제4조(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p>		

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
<p>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제7조에 따라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 2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2.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3.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p>부 칙 <제16249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제6조의 개정규정에</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아동</p> <p>2. 이 법 공포일까지 아동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공포일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 지급 신청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p> <p>① 부칙 제2조(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지급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해당 아동이 2019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달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을 부칙 제2조에 따라 지급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지급 신청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면 해당 아동의 출생일이 속하는 달</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p> <p>제4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조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6세 생일이 도래하여 2019년 9월 1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1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부 칙 <제16737호, 2019. 12.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p> <p>제23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p> <p>③ 생략</p> <p>부 칙 <제18579호, 2021. 12. 1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수당 수급권자(부칙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p> <p>제4조(아동수당 추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p> <p>②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p>		

아동수당법 [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
<p>아동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p> <p>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p> <p>제7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아동수당법 <small>[시행 2023.9.14.] [법률 제19455호, 2023.6.13.,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령 <small>[시행 2023.9.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9.12., 일부개정]</small>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small>[시행 2022.2.11.] [보건복지부령 제863호, 2022.2.11., 일부개정]</small>
<p>부 칙 <제19455호, 2023. 6. 13.></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57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p>		





아동수당법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 1)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2) 최근 1년간 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은 경우
- 마.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6	12	2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6	12	2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	3	6	10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11.>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지급 대상 아동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내용	「아동수당법」 제6조제1항·제11조·제12조제1항·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제9조·제10조의2제1항·제11조제1항제4호, 제15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2항제4호·제10조제3항·제11조제1항제4호·제13조제4항·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의 변경 신청,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보호자 변경의 신청, 수급권의 변경·상실 등에 대한 신고, 이의신청의 위임		
대리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아동수당의 신청,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의 변경 신청,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보호자 변경의 신청, []수급권의 변경·상실 등에 대한 신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아동의 보호자(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별도안내
수급아동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아동수당 입금 희망 계좌:	<input type="checkbox"/>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 <input type="checkbox"/>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개월간)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급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을 위한 아동수당 입금계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수급아동 보호자와 대리수령인(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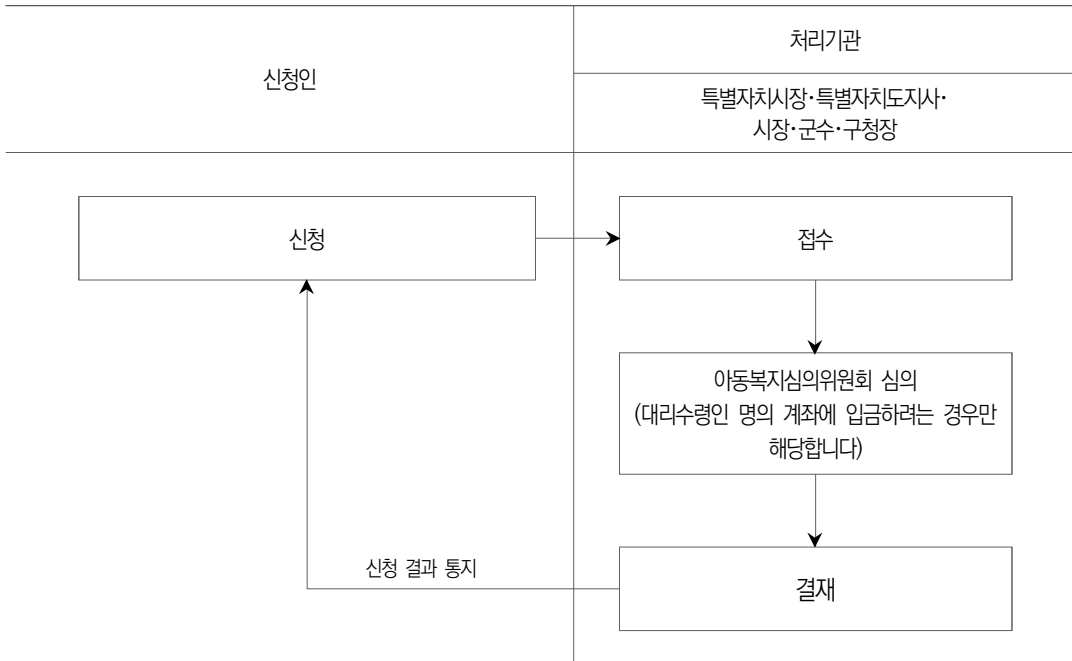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	------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청구권자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대리인	보호자가 여럿인 경우		()명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기타()
------	----------------------------------

미지급 아동수당 내역	사망자(수급아동)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청구액	미지급기간 ()개월	천원 []년 월 -]년 월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선정	
				선정일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아동수당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기재요령	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람(보호자)입니다. 4.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외 보호자들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첨부서류	1. 수급아동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가 사망 당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담당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부합 []미부합 2.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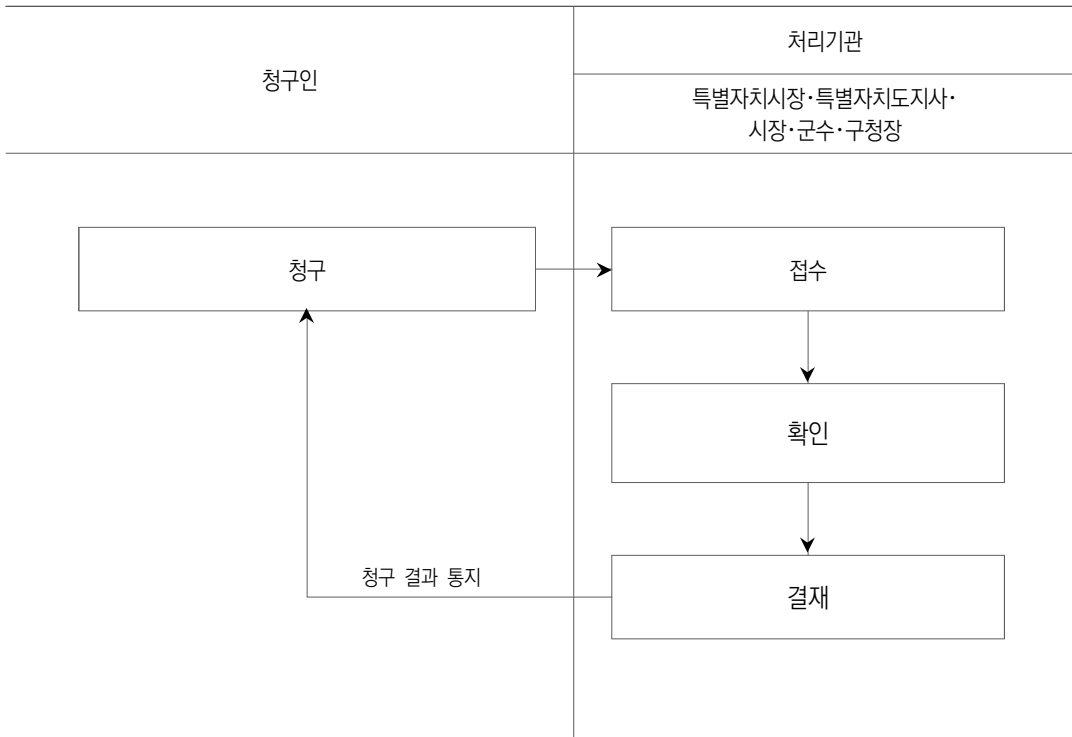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

지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결정 내용	[] 지급대상자 해당	귀하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망자(수급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미지급 기간 ()개월 []년 []월 - []년 []월
		보호자가 여럿 여부 [] 단독 [] 보호자(명)	대표자 선정 여부 [] 선정 [] 미선정
		지급결정 금액	입금 예정일
		지급 금융회사	지급 계좌번호
	[] 지급대상자 미해당	귀하는 다음의 사유로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보호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	

- 「아동수당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위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3. 27.>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수급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경 전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아동과의 관계
	주소		
변경 후 보호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아동과의 관계
	주소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보호자 변경 사유	[] 변경 전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변경 전 보호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우 []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 수급아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변경 전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변경 전 보호자의 성품·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 그 밖에 변경 전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아동수당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호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보호자 및 가구원의 변경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3. 27.>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 어두운 난(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수급아동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아동과의 관계
	주소		
변경 후 보호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아동과의 관계
	주소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보호자 변경 사유	<input type="checkbox"/> 변경 전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변경 전 보호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수급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수급아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변경 전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변경 전 보호자의 성품·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변경 전 보호자의 사망, 실종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통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서면 [] 전자우편 _____ [] 문자 메시지 [] 기타()		

「아동수당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호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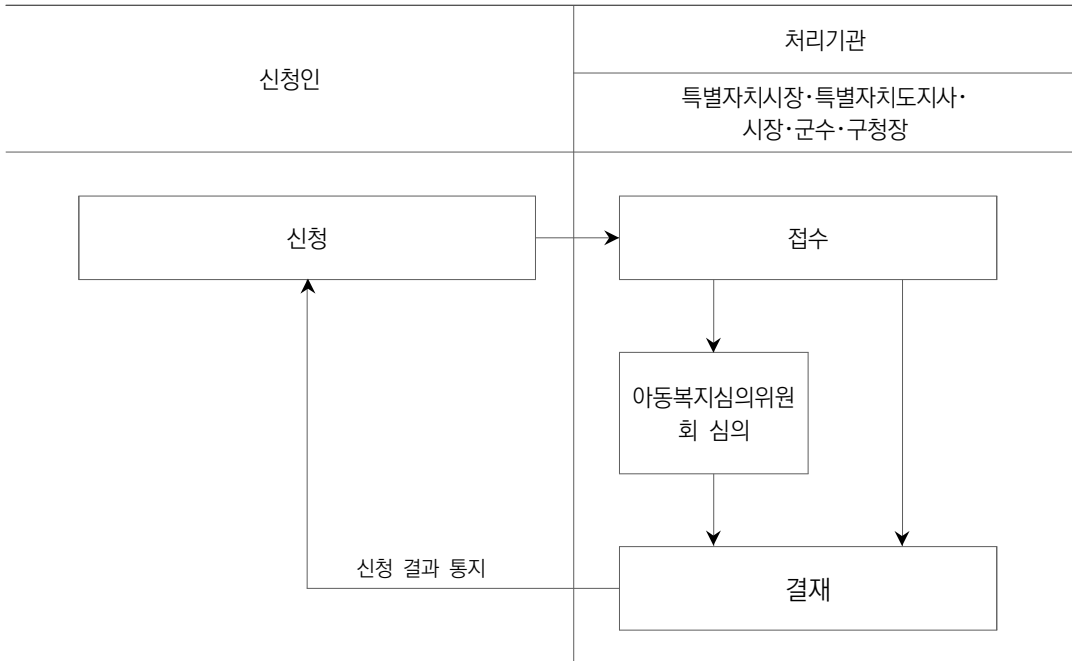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3. 27.>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

받는 사람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급아동	성명	생년월일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결과	<input type="checkbox"/> 변경 적합			
	<input type="checkbox"/> 변경 부적합 (사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안내사항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수급아동은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기간(국의 체류 기간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동안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아동수당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수급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아동 보호자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 사유	1.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급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수급아동의 귀국 등 위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 []수급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수급아동의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신고 사유 발생일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_____ []문자 메시지 []기타()		

「아동수당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또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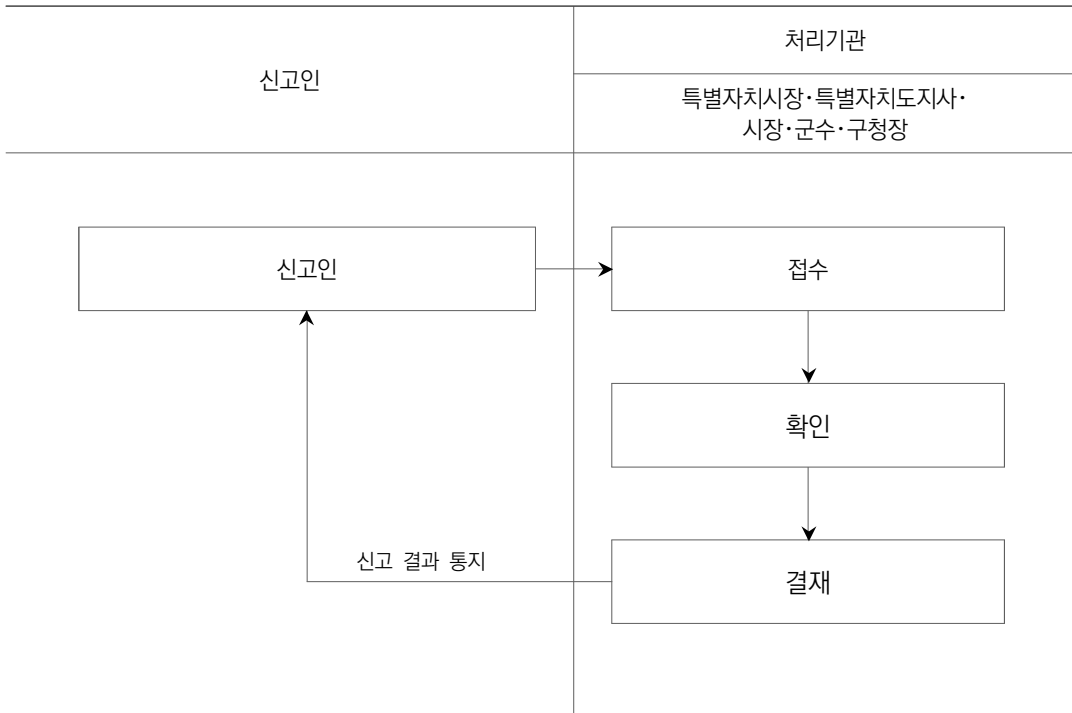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계
	주소		
이의신청일			
처분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각하	[]기각	[]처분 취소·변경
이의신청 결정 사유	〈별지 작성 가능〉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성명)

문의전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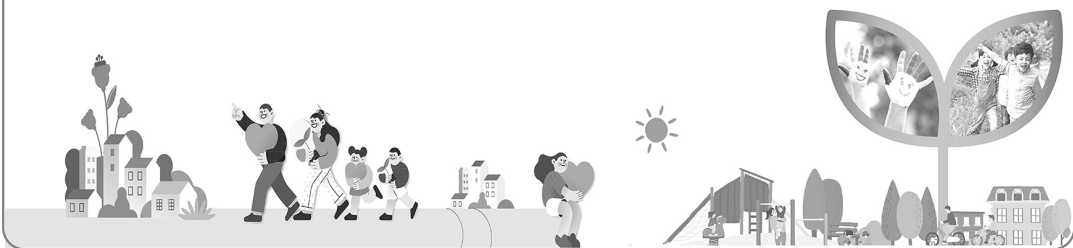
1. 각하: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 기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9. 3. 27.>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1.12.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8년도 선정기준액) 〈삭 제〉

제3조(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산정시 차감하는 금액) 〈삭 제〉

제4조(재산 산정시 항공기 및 선박 가액의 산정 방법) 〈삭 제〉

제5조(재산 산정시 임차보증금 가액의 산정 방법) 〈삭 제〉

제6조(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삭 제〉

제7조(재산 산정시 임대보증금의 차감 한도) 〈삭 제〉

제8조(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의 특례) 〈삭 제〉

제9조(아동수당 지급 금액 감액 기준) 〈삭 제〉

제10조(보호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규칙 제4조제2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영 제4조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에 한한다.

1. 난민인정증명서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3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 <삭제>
5. <삭제>
6.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외국 국적 여권 사본
- 6의2.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국내 여권 사본
- 6의3.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시 여행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2조(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규칙 제5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청소년증
2.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3조(조사 결과 등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자를 조사한 결과와 법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내용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파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14조(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소득·재산 수준) <삭 제>

제15조(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생사 불명 기간) 영 제1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제16조(아동수당 신청서의 제출) 규칙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5항의 수당(이하 ‘영아수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영아수당 지급액) 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31일까지 영아수당 지급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110호, 2018.6.20.>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7호, 2019.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감액 금액의 소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 제9조제1호에 따라 감액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아동 중 2019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 지급 신청이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그 감액된 금액(해당 아동의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기간 중 아동수당이 감액 지급된 개월수에 월 5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금액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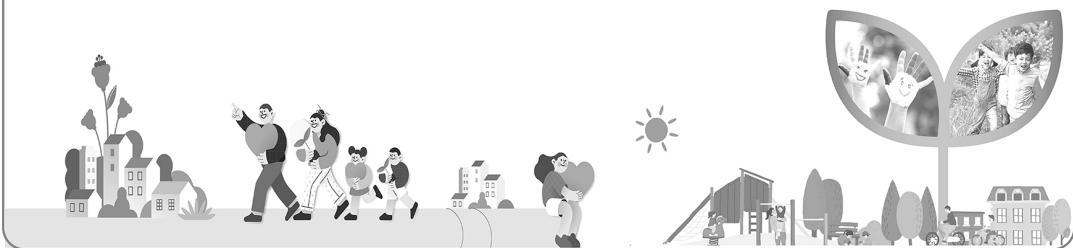
부 칙 <제2019-316호, 2019.12.26.>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54호, 2021.12.30.>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3.12.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한 공통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 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학비지급신청서, 같은 규칙 제34조제1항의 급여(변경)신청서, 같은 규칙 제38조제2항의 차상위계층 조사 신청서 및 같은 규칙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신청서(다만, 희망저축계좌 I 지원 신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신고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신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복지급여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학비지급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의 지급신청서,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신청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신청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1항의 신청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의 신청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의 의료급여(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의한다.

제3조(소득·재산 신고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1호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2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1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제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제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제2호의 소득·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식에 의한다.

제4조(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2호,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3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1항제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제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제3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의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 (변경) 서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의 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3제1항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유아교육비지원신청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이용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에 의한다.

제6조(시설입소 신청서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입소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의 시설입소 및 제7조의 전문치료기관 입원이나 요양소 입소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및「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4제1항의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에 의한다.

제7조(해산·장제급여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해산급여지급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장제급여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 신청서에 의한다.

제8조(자금의 대여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자금대여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자금대여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에 의한다.

제9조(사회보장급여 결정 등 통지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결정·변경·중지 통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결정통지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결정통지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3항의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중지)통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4항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 및 「기



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지급결정통지서, 지급변경(상실)통지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지급결정통지서, 지급변경(상실)통지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의 지급결정 통지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활동 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유아교육비 지원 결정 통보서와 유아교육비 지원 변경·정지·중지·상실 통보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3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보장급여 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에 의한다.

제10조(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조사표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에 의한다.

제11조(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수급자관리카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수급자관리카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장애인등록카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특별지원 청소년 관리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의한다.

제12조(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자금대여관리카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자금대여 관리카드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의한다.

제13조(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7에 따른 해당 읍·면·동의 수급자 현황관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에 의한다.



제14조(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사회보장급여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의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에 따른 비용 환수 통지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 비용징수 통지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4조의제1항의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납부통지서, 「영유아보육법」제40조2의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통지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징수 통지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10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에 의한다.

제15조(이의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이의신청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 및 제40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긴급복지지원법」제16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1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의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제16조(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제4항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결정 통지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제4항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식) 「의료급여법 시행령」제6조의2의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현장조사 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2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2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제2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8호에 따른 현장 조사서류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제2011-1호, 2010.12.17.>

이 고시는 2011.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29호, 2012.3.5.>

이 고시는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02호, 2013.6.27.>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호, 2014.1.2.>

이 고시는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01호, 2014.6.27.>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69호, 2014.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별지 제1호, 제13호, 제15호서식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4-229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1호4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5-119호, 2015.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1호4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5-228호, 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1호의4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67호, 2016.4.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서식의 경우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16.6.30.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식과 개정서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6-92호, 2016.6.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 조사 서식의 적용례) 제19조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제2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중 현장 조사 서류에 관한 개정규정의 각 시행 이후 최초로 각 법령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208호, 2016.11.11.>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44호, 2017.3.14.>

이 고시는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613호, 2017. 10. 20.>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63호, 2018. 3. 14.>

이 고시는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29호, 2018.6.15.>

이 고시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94호, 2018.12.27.>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55호, 2019.3.21.>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23호, 2019.6.26.>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80호, 2019.12.23.>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64호, 2020.3.24.>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87호, 2020.12.10.>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86호, 2021.6.30.>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14호, 2021.8.5.>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14호, 2021.12.23.>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54호, 2022.6.27.>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호의 3서식은 202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303호, 2022. 12. 28.>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0호, 2023. 3. 3.>

이 고시는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89호, 2023. 5. 12.>

이 고시는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50호, 2023. 12. 19.>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발간자료

지침과 관련된 질의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